



目 次

● 경매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이호행	1
● 콘텐츠IP 중심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지형 변화 연구 이성민	15
● 방송대 U3A 운영 사례 연구 이해주	31
● 포스트휴머니즘과 평생학습인: 대산의 인본주의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 정민승	55

CONTENTS

☞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Auction	Ho-Haeng Lee 1
☞ A study of the content IP-centric shift in the broadcast video content industry landscape	Lee, Sungmin 15
☞ A case study on the KNOU U3A program	Lee, Hae Joo 31
☞ Post-humanism and Lifelong Learner: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Daesan's Idea	Jung Min Seung 55

경매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이 호 행*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Auction

Ho-Haeng Lee

◁ 목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나오며 |
| II. 경매의 법적 성질 | 참고문헌 |
| III. 경매와 담보책임 | |

I. 문제제기

우리 민법 제578조는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¹⁾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 담보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보충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1) 민사집행법은 ‘매수인(경락 전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인 내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지만(동법 제135조 등 참조), 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578조의 법문에 따라 ‘경락인(또는 매수인)’이라고 표현한다. 아마도 민사집행법의 제정과정에서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동일한 사람을 민법과 민사집행법이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용어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 2) 현행 민사집행법은 담보권실행경매에 대하여 사법상의 매매를 국가가 대행해 줄 뿐이라며 경매용어를 매매와 동일하게 완전히 변경하였다. 오시영,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민사법학 42, 한국민사법학회, 2008, 351면.

종래의 논의는 민법 제578조에 따른 책임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경매를 매매의 일종이라는 전제³⁾하에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보면서 제578조의 책임을 담보책임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주도하에 경매가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경락인에게 이전되고, 경락인이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여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매매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한다.⁴⁾ 이러한 견해가 종래의 통설적 입장이며 현재도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⁵⁾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논의는, 경매를 공법상 처분으로 파악하거나, 공법상 처분과 사법상 매매의 양면성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매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서 민법 제578조가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성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경매의 법적 성질

1. 대법원의 태도⁶⁾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밑줄은 필자)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⁷⁾ 반면,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밑줄은 필자),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한다.⁸⁾

2. 견해의 대립⁹⁾

(1) 통설(=사법상 매매설)

3) 김중환/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283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218면 등. 다만, 사법상 매매이면서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4) 민법주해 XIV(곽윤직 편집대표), 박영사, 1997, 457면(남효순 집필부분).

5) 이에 대해 김형석, 경매와 담보책임, 민사법학 93, 한국민사법학회, 2020, 224-225면, 각주 6)에서 “그 표현에 비추어 아마도 我妻榮, 債權各論 中卷一, 1957, 294면의 (압도적인) 영향이라고 추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등.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9) 이에 대해서는, 추신영,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공신적 효과, 토지법학 24(1), 한국토지법학회, 2008, 258-262면을 참고하였다.

대법원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민법은 경매를 사법상 매매의 하나로 보면서, 민법 제578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매매계약에서 인정되는 담보책임과 동일한 성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¹¹⁾ 그 이유는 민법이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민법 제578조). 다시 말하면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듯이 경매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법설도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있는데, 제1설은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행위가 매도의 청약이고, 자신보다 높은 매수신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신고를 매수의 청약으로 보고 있다. 제2설은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행위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약의 유인이고, 매수신고를 매수의 청약으로, 매각허가결정을 그에 대한 승낙으로 본다.¹²⁾

(2) 공법설(공법상 처분설)

경매를 사법상의 매매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순수한 공법상의 처분행위로서 일종의 공용수용과 유사한 성질로 보는 견해와 재판상의 형성행위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경매를 일종의 공용수용과 유사한 성질로 보는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그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매각하기 때문에 공용수용행위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학설에서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을 공법상 수권에 의해 그 권리를 박탈한 후 최고가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수여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성질로 볼 때 사법상 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채권자는 집행청구권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자신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법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도 민법상의 대리인처럼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인 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도 자신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각을 수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도 공법상의 직무로 인해 매도인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¹³⁾¹⁴⁾

이에 반해 경매를 일종의 재판상의 형성행위로 보는 학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은 채무자의 의사형성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경매를 순수한 형성적 소송행위로 보아, 매각허가결정을 통한 소유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 및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¹⁵⁾

10) 서종희, 타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연세법학 2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95-96면.

11) 김형석, 앞의 글, 224면. 이는 통설이 제578조의 책임을 명확하게 담보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보책임이라는 제목하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2) 이재성/ 이시윤/ 박우동/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744면(추신영, 앞의 글, 259면에서 재인용).

13) 장경학, 물권법총론, 일한도서, 1960, 226면. 경매의 성질을 공법상의 처분행위로 보는 이유로서, 경매는 국가기관이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서 하는 강력한 환가행위이며, 공용징수와 비슷한 공법상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인 만큼, 공용징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경매에 의한 최고가경매인의 부동산물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을 다시 처분하려면 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고 한다(추신영, 앞의 글, 259면 각주 3)에서 재인용).

14) 이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실질적 내용인 청약과 승낙의 형태로 나타나는 매수신고와 대금지급에 의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의 민법상 매매로 나타나는 형식적 내용을 소홀히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매수인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수여부나 그 가격을 결정하는 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비판(추신영, 앞의 글, 261-262면)이 있다.

15) 이재성/ 이시윤/ 박우동/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745면.

(3) 양성설

경매의 성질에 대하여 사법상의 매매와 공법상 처분행위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로서 관점에 따라 몇 가지의 세부적인 학설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경매는 집행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상 부여된 자신의 권능에 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용수용을 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민법 제578조에 따른 매매의 형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소유자와 채권자라고 볼 수 있는 매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법상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¹⁶⁾ 말하자면 실질적·공법적으로 보면 매수인이 될 자가 집행법원에 매수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며, 형식적·사법적으로 보면 매수신고와 매각허가를 매수의 청약과 매도의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¹⁷⁾ 제2설은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부동산의 처분권을 빼앗아 행사하는 집행권력에 의한 집행처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케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집행법원이지만 원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매수신고는 청약이고, 매각허가는 승낙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각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이 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매수신고에 있어서 당사자의 무능력이나 무권대리 등 사법상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생기고, 항고나 재심으로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¹⁸⁾ 제3설은 경매는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매는 절차를 중시하여 절차에 따른 목적과 구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즉 실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수의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는 매수신고가 있고,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 매각허가가 있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양 당사자에게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민법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행기관에 매각허가를 신청하는 매수신고를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매각허가를 내리는 일종의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¹⁹⁾ 매수신고에 대한 착오, 무권대리, 사기·강박 등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시까지만 허용될 뿐, 그 이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²⁰⁾ 이를 통해 보듯이 경매는 민법상의 실체적 측면과 공법상의 절차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4설은 경매는 국가권력인 집행법원과 이에 복종하는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법상의 수직적 행위로서 국가가 강제집행권을 발동하여 집행당사자들에게 집행처분을 내리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매와 사법상의 매매는 그 효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경매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사법상 매매계약당사자의 지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를 매매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²¹⁾

16) 김정현, 경매실무요론(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75, 37면(추신영, 앞의 글, 260면 각주 5)에서 재인용).

17) 이재성/이시윤/박우동/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746면.

18) 이재성/이시윤/박우동/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746면.

19) 강문중,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재판자료 제36집, 법원행정처, 1987, 188면(추신영, 앞의 글, 260면 각주 8)에서 재인용).

20) 이재성/이시윤/박우동/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747면.

21) 김중환, 신물권법(상권), 법문사, 1967, 350면(추신영, 앞의 글, 261면 각주 10)에서 재인용).

3. 평가 및 사건

(1) 사법설에 대한 검토

1) 사법설은 경매의 실체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구성이라고 평가된다.²²⁾ 그러나 실체적 측면에서 경매가 매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578조를 근거로 경매가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민법 제187조와 체계상 정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는 매매계약에 유사하기 보다는 공용징수에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승계취득이라기 보다는 원시취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이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이 사법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²³⁾ 또한,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경락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매매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가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의 부담자는 채무자인 매도인에 국한되지만,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부담자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매를 매매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²⁴⁾

2) 외관상 등기가 이전되는 과정을 보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매도인이고 경락인이 매수인처럼 보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매도인의 지위에 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매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강제경매”라는 말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질권)²⁵⁾을 설정하는 설정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당해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잠정적 동의가 있긴 하지만,²⁶⁾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잠정적인 의사일 뿐 경매 당시 그의 효과의사라고 할 수 없다. 즉, 담보권 설정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각오를 한 것뿐이지,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담보권에 내재하는 실체적 환가권능에 기초하여 그 처분권이 적법하게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²⁷⁾ 이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설은 타당하지 않다.²⁸⁾ 따라서 사법설이나 양성설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의사를 의

22) 예컨대, 추신영, 앞의 글, 261면.

23) 추신영, 앞의 글, 261면.

24) 이에 대해, 사법상 매매설을 취하는 통설적 견해는 경매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칙이라고 보는데, 이는 순환논법일 뿐이다. 유사한 취지의 비판으로, 김형석, 앞의 글, 225면 이하 참고.

25) 유치권은 설정자의 의사라는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애초부터 설정자의 의사와 무관하다(민법 제320조 참조).

26) 이를 “강제집행을 감수할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준규,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再論)-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사법 1(60), 사법발전재단, 2022, 401면.

2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2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제하고 있을 뿐이며 의사표시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경매를 사법상 매매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제(擬制; fiction)이다.²⁹⁾

(2) 양성설에 대한 검토

1) 양성설은 경매의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포섭한 이론구성이라고 평가된다.³⁰⁾ 즉,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에 의해 처분이 발생한다는 점과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민법상 매매와 같은 형식적 측면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경락인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수여부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민법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매매와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³¹⁾ 그러나 양성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신고가 청약이고 경락인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더라도, 승낙의 주체가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에서 쉽사리 동의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집행법원이 의사표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비판에 납득가능한 답을 할 수가 없다.

2) 양성설의 세부적 학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설은 (형식적·사법적 측면에서) 매수신고와 매각허가를 매수의 청약과 매도의 승낙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는 집행법원이 매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법원이 의사표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느냐라는 기본적 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

2설은 1설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유자가 완전히 매도인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관점을 추가하여 소유자와 경락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견해는 매수신고(=매수의 청약)를 집행법원에 하고, 매각허가(=매도의 승낙)는 집행법원이 하는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3설은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나누어 설명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2설과 동일하다. 이 견해는, 실체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매수신고(=매수의 청약)를 집행법원에 하고, 매각허가를 집행법원이 하는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경락인과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설은 경매는 공법상 처분이지만, 법률효과의 측면에서 경매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사법상 매매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공법설에 가장 가까운 이론구성이라고 생각되지만, 매매계약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3) 소결

사법설과 양성설은 소유자가 매도인이고 경락인이 매수인으로 실체법상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매각기일 공고행위를 청약의 유인으로, 매수신고를 매수의 청약으로, 매각허가결정을 그에 대한 승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각기일 공고행위나 매각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의 소송행위이고, 매수신고 역시 집행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매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필요한 필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9) 최준규, 앞의 글, 400면.

30) 예컨대, 추신영, 앞의 글, 261면.

31) 추신영, 앞의 글, 262면.

수신고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소송행위에 불과할 뿐, 거기에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에서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민사집행법이 민법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임은 자명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인 법원과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을 위한 절차적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미에서의 사법이라기 보다는 공법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경매를 사법상 매매와 비교할 때 ①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행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이 이전된다는 점, ② 경매에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절차에 개입하여 능동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 ③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³²⁾

결론적으로, 경매는 공용징수 내지 공용수용에 유사한 공법행위(보다 정확히는 공용수용 유사설)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³³⁾ 즉, 경매는 부동산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국가의 강제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매매와 다르고, 매수신고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불과할 뿐, 이를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범주에 억지로 포섭할 이유는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독립한 제도이며, 민법 제578조는 경매에 있어서 절차법상 보호받지 못한 경락인을 사후 구제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규정으로, 다만 입법편의상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인 매매의 질에 규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법체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책임에 관한 민법 제578조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³⁵⁾

III. 경매와 담보책임

1. 서설

경매의 매수인, 즉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제578조의 규정을 두고 있음은 자명하다. 문제는, 대법원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유효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³⁶⁾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이 일견 서로 모순·저촉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다음 ‘2. 대법원의 태도’에서 논의함).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되는 두 쟁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경매의 법적 성질에 기초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체법적 관점에서 “경락인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내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법이론적 측면에서 논의를

32) 송인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스티스 91, 한국법학원, 2006, 205면.

33) 독일에서는 공법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경락인의 원시취득으로 이해하면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부정된다는 점이 우리 민법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김형식, 앞의 글, 226-227면 이하 참고.

34) 김상찬/ 송서순, 경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과 정책 12(1),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95-96면.

35) 김형식, 앞의 글, 231면 이하에서는 민법 제578조를 전제로(보다 정확히는 민법 제578조가 단순한 담보책임이 아님을 전제로)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칙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경매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결정적인 쟁점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양성설에 가까운 입장을 표하고 있다(특히, 같은 글, 234면 참고). 이 견해는 무척이나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지만,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36) 김형식, 앞의 글, 235면; 김상찬/ 송서순, 앞의 글, 91면; 서종희, 앞의 글, 96면 등. 다만, 최준규교수는 타인 소유물의 경매가 문제된 경우에는 경매의 유효·무효와 제578조의 적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앞의 글, 401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러나 필자는 기본적으로 경매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법이론적 정합성과 법체계상 정합성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본다.

2. 대법원의 태도

(1) 동산 경매의 경우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³⁸⁾

(2)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³⁹⁾

(3) 학설의 평가

(1)의 판결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거래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인소유 동산의 경매도 유효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론적으로, 민법 제578조의 규정과 정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판단된다. 그러나 (2)의 판결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강제경매가 무효이므로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37) 예컨대, 김형석, 앞의 글, 233면은 “우리 법제에서 경매를 매매라고 성질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송인권, 앞의 글, 205면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사이의 등가성이 파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담보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경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사법상 매매의 경우를 유추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경매의 법적 성질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이익상환 조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장으로, 최준규, 앞의 글, 393면 이하 참고.

3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3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40) 동지: 최준규, 앞의 글, 389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578조가 제569조 및 제570조를 준용하므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다.⁴¹⁾

3. 경매절차의 무효?

(1) 민사집행법의 태도

대법원은 “경매절차의 무효”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⁴²⁾ 민사집행법은 제1조에서부터 제312조까지 전체에 걸쳐 무효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취소규정(동법 제17조, 제18조, 제46조 내지 제59조 등)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경매 중 취소사유가 있어 그 효력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라는 개념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절차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채 적법하게 경매가 종결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확정된 별소에 의하여 소급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실무에 따르면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 ①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이에 기한 효과도 소멸하고, ② 그러나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예를 들어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 ③ 집행을 취소에 의하여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되며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으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⁴³⁾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그러나 위 (1)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i) 경매개시의 원인이 되는 집행권원(약속어음 공정증서)이 위조된 경우,⁴⁴⁾ ii) 실체상 부존재하는 담보권(가령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거나 시효소멸된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 위조서류에 기초한 저당권설정등기)을 기초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⁴⁵⁾ iii) 채무자 소유의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초로 채무자 소유의 신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⁴⁶⁾, iv)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경우,⁴⁷⁾ v) 집행권원의

41) 오시영, 앞의 글, 333면; 김형석, 앞의 글, 236면-238면; 최준규, 391면 등.

42) 송인권, 앞의 글, 200면도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규정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시영, 앞의 글, 331면 이하 참고.

4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집행총론-, 사법연수원, 2020, 314면 이하.

4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를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5)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⁴⁸⁾ 내지 부존재⁴⁹⁾의 경우 등이 그러하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⁵⁰⁾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상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⁵¹⁾

한편,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러하지 않고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⁵²⁾ 즉,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로 매각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룰 수 없다.⁵³⁾

(3) 사건

경매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경락인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논의된 앞서의 다양한 논의들은 구체적 타당성과 이익 조정의 국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경매의 법적 성질을 제쳐두고 경매의 유·무효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 나아가 경매의 유·무효 여부를 떠나 담보책임 규정을 통해 경락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에도 쉽사리 동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경매가 무효라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이는 경락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이 상실되는 결과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보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론적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
- 4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47)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4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으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면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제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49) 대법원 2002.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급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려면,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 등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았다는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는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50)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의 구체적 예에 대해서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부동산집행 1-, 사법연수원, 2020, 431면 이하 참고.
- 5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 5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부동산집행 1-, 436면 이하.
- 5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부동산집행 1-, 431면; 민일영 편집대표[심활섭], 주식회사집행법 III(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811면.

서, 경매의 유·무효는 경매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한 이후에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경매를 사법절 내지 양성절에 의해서 설명한다면, 경락인을 보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매수인의 보호문제에 국한되어야 하고, 경매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 채무자, 경락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 물상보증인, 진정한 소유자인 제3자 등의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매를 매매와 동일하거나 그러한 성질을 포함한다고 보는 한, 당사자의 보호만이 중심이고 그 외의 이해관계인은 기본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를 공용수용행위에 유사하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법원이 고권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매의 유·무효는 경매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경매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으므로 경매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이 경우에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을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만이 문제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경매가 유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⁵⁴⁾⁵⁵⁾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의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경락받은 매수인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경락인은 보호되어야 한다.

IV. 나오며

필자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경매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로 본다면, 목적물의 소유자는 매도인이고 경매의 경락인은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실체법인 민법상 매매 법리를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에 기초한 매매의 합의(청약과 승낙)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경매에서는 매매의 당사자가 아닌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등의 보호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민법적 관점 및 이론에 기초하여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및 담보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 실체법인 민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의 매수인이 보호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⁵⁶⁾ 물론 대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경매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

54) 비슷한 취지의 견해로, 최준규, 앞의 글, 397면. “경매절차개시의 원인이 되는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자는 강제집행에 있어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 발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부존재하므로, 강제집행의 핵심기능(책임재산의 강제 매각과 매각대금의 배당변제)은 작동할 수 없다. 강제매각의 효력을 집행절차상 매도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도 가능하지 않다. 집행권원이 무효여서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매도인 소유 물건도 취득할 수 없다. 경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결론을 경매절차는 ‘공신(公信)적 효과’가 없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경락인은 제3자 소유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집행권원이 유효인데 경매목적물이 경매절차상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인 경우는 위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 집행권원 자체는 정당하므로 경매절차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즉 이 경우 경매절차는 ‘절차법적으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55) 또한, 서중희, 앞의 글, 103면. “민법 제578조의 적용요건으로 경매절차의 유효성 판단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56)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인 바, 이는 경매 절차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해석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

한 여러 판결을 양산해 내고 있지만, 그 중 어느 이론도 논리적 일관성이 완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⁵⁷⁾ 오히려 경매를 사법상 매매로 보면서 경매의 매수인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매를 공용수용에 유사한 행위로 보고, 경락인의 보호는 집행법원의 재판(경매개시결정이든, 집행권원이든)이라는 공법행위에 따른 공권적 효과로 이해되어야 하고, 경매의 경락인 역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하자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이고, 담보책임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문제라는 점이다. 여기서 피력한 필자의 주장은, 경매의 법적 성질에 착안한 너무나 투박하고 근거 없는 독단적 주장이고, 이론적으로 성긴 주장임을 인지하고 있다. 독자들의 혹독한 채찍질을 기다린다.

른 글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57) 최준규, 앞의 글, 383면 이하 참고. 이 글에서는,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민법주해 XIV(곽윤직 편집대표), 박영사, 1997
민일영 편집대표[심활섭], 주석민사집행법 III(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집행총론-, 사법연수원, 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부동산집행 1-, 사법연수원, 2020.
이시윤, 민사집행법[제8개정판], 박영사, 2020

< 논문 >

- 김상수, 임의경매의 공신력 - 대판(전) 2022. 8. 25. 2018다205209, 민사집행법 연구 19(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3
김상찬/ 송서순, 경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과 정책 12(1),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김형석, 경매와 담보책임, 민사법학 93, 한국민사법학회, 2020
서중희, 타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연세법학 2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송인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스티스 91, 한국법학원, 2006
오시영,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민사법학 42, 한국민사법학회, 2008
이창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공신력 확대, 대한부동산학회지 36(1), 대한부동산학회, 2018
추신영,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공신적 효과, 토지법학 24(1), 한국토지법학회, 2008
최준규,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사법 1(60), 사법발전재단, 2022
최우진,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74, 한국법학원, 2019

*** ABSTRACT ***

In my opinion, being logically consistent is the starting point for a theory that all scholars can agree on. For example, if the legal nature of an auction is viewed as a judicial sale, the owner of the object is the seller and the auctioneer is the buyer. And based on the civil law perspective and theory,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merchant acquires ownership and recognizes collater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our legal system, where real estate registrations are not recognized as authoritative in the event of an invalid auction, the likelihood that the buyer of an auction will be protected is significantly lower unless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the Civil Code, which is the substantive law.

I argue that an auction should be viewed as an act akin to a public use activities, and that the protection of the auctioneer should be understood as a public effect of the public law act of a trial by an enforcement court (whether the decision to open the auction or the enforcement authority), and that the auctioneer should be protected unless the trial by the enforcement court is flawed. Furthermore, under the premise that auctions are analogous to public use activities, we believe that courts have a consistent standard for reconciling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in a high-profile case and reach a fair and reasonable conclusion.

콘텐츠IP 중심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지형 변화 연구*

이 성 민**

A study of the content IP-centric shift in the broadcast video
content industry landscape

Lee, Sungmin

◁ 목차 ▷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콘텐츠IP의 개념과 방송영상 산업 | 참고문헌 |
| III.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지형 변화 | 논문초록 |
| IV. 변화의 방향과 주요 쟁점 | |

I. 머리말

지난 몇 년간 영상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변화의 동력은 OTT 중심의 시장 재편과 그로 인한 콘텐츠IP의 부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기반의 영상 소비문화의 확산은 기존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핵심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글은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IP와 OTT, 그리고 스튜디오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OTT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의 변화는 더욱 과격하게 진행되었다. 실시간 편성(linear programming)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이미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 속에서 약해지는 흐름에 있었지만, OTT의 빠른 성장이 이를 더욱 가속화 했다. 특히 드라마 분야에서의 방송 사업자의 영향력은 글로벌 OTT의 압도적인 투자 규모 앞에서 빠르게 위축되었다. 유통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의 불꽃은 콘텐츠 제작 영역으로 옮겨붙었다. 기존에 방송 사업자를 콘텐츠 납품의 1순위로 생각했던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들은 OTT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고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조교수.

려한 기획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은 제작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격렬한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 소비 환경이 마련되면서 콘텐츠 분야별 경계는 점차 흐려지는 ‘액체 미디어(liquid media)’화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미디어 단위로 나뉘어 각자의 영역을 지켜오던 콘텐츠 시장은 디지털 전환의 확대에 따라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 과거에는 극장, 방송(TV), 출판 등 ‘단단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던 산업과 콘텐츠 이용의 방식은 디지털 스크린에서의 연속적인 소비 행위로 대체되고 있다. 디지털 스크린 앞에 앉아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를 식별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IP는 이렇게 녹아내린 ‘액체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단위가 되어 준다.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자는 개별 미디어 소비의 관습을 가진, 미디어 단위로 구별된 존재였다. 반면, 액체 미디어의 이용자는 언제든지, 흘러 다니듯 서로 다른 미디어를 넘나들며 콘텐츠를 이용한다.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유동하며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묶어줄 수 있는 핵심 단위가 바로 콘텐츠IP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IP의 중요성 확대가 가져오는 산업의 변화를 특히 스튜디오화의 문제에 주목해서 검토한다. 글로벌 OTT의 성장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의 글로벌화를 가속했고, 규모의 확대 속에서 IP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이어졌다. 스튜디오화는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상징하는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변화의 핵심 요인인 콘텐츠IP의 개념을 살펴보고, 글로벌 OTT 중심의 산업 변화의 지형을 살펴본 뒤, 이로 인한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변화의 양상과 그로 인한 주요 쟁점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콘텐츠IP의 개념과 방송영상 산업

1. 콘텐츠IP의 개념

이 글에서 주목하는 콘텐츠 IP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적 확산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이성민·이윤경, 2016)으로, 핵심적인 IP 자산으로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하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IP 권리 중에서도 저작권에 포함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하면 후속 시즌과 스핀오프 등의 콘텐츠 확장을 이어갈 수 있으며, 상표권을 활용하면 다른 산업으로의 가치의 전이와 확장을 이어갈 수 있다.

콘텐츠IP의 의미는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묶음이라는 법적 권리로서의 개념과 팬덤의 관여도와 규모가 갖는 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종의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적인 문화상품으로서 콘텐츠 각각이 아니라, 이들 콘텐츠의 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팬덤과 이들을 묶어주는 단위로서의 콘텐츠 브랜드를 IP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이 콘텐츠 이용자라면, 콘텐츠IP의 팬덤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적극적 후원자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늘 시청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리포터>라는 영화와 관련된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람이 몰려들 수 있다면, <해리포터>는 콘텐츠IP로서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지식재산이란 표현은 한동안 낯선 단어였다. 2016년 이전까지는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식재산, 즉 IP란 용어는 애니메이션과 웹툰 산업을 경유해서 드라마 등 영상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지금은 어디에서나 쉽게 IP란 표현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IP 개념은 단순히 용어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전략을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IP로서의 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콘텐츠 생명력에 주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인기 있던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를 만나면서 IP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VOD의 소비환경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광고 기반으로 짧은 영상을 소비할 수 있는 AVOD 플랫폼[유튜브, 네이버 TV 등]과 구독형 플랫폼(SVOD)이 활성화되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화제가 되는 영상이 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또 VOD 중심의 소비는 사람들에게 "실시간 소비"의 부담을 줄이고 취향 중심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대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밈(Meme)과 같이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콘텐츠 요소가 소비를 자극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시의성의 감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보존과 활용을 더욱 쉽게 하고 있다. 과거의 콘텐츠도 얼마든지 다시 발굴될 수 있고, 팬들의 사랑을 토대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업계의 상식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콘텐츠 IP 자산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랜 기간 사랑받은 콘텐츠는 막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IP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콘텐츠를 지식재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자, 그 가치를 여러모로 평가하며 단기적 성과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활용을 고민하는 모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 변화 요인 찾기: OTT의 성장과 방송영상 산업의 영향

OTT 서비스의 성장은 방송영상 산업의 변화를 추동하고 콘텐츠IP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변화 요인 중 하나다. OTT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스크린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극장 중심의 영상 소비문화에 균열을 가져왔고, OTT 서비스의 약진은 영화와 방송영상 소비의 시간적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영상의 전달 방식이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스트리밍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달되는 영상은 과거의 전달 방식과 비교하여 더 폭넓은 동시 확산과 지리적 접속의 확대를 가져온다. 이러한 스트리밍화와 글로벌화가 가져온 제작-유통 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한국 방송영상 산업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낸 변화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 서비스의 성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거대한 성공은 넷플릭스라는 서비스의 특징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는 영상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글로벌 영상 콘텐츠의 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OTT 서비스가 영상 콘텐츠의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이유는 영상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의 미디어 산업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영화가 이야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필름(film)의 형태로 국제적 유통이 쉬웠던 영화 산업의 특징과 달리, 방송사업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작동하는 각국의 미디어 규제와 산업 구조의 특징 때문이다.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가정이 단위가 되는 거실의 TV로 침투해

야 하는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방송을 통한 영상의 수출은 늘 일정 수준의 제한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의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던 중국도 일정 기간 이후 ‘방송’을 통한 유통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모를 제한하려고 했던 시도가 나타났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는 이러한 규제 틀을 ‘통신 서비스’의 속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우회한다. 다수의 국가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쉽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거실에 놓인 TV 스크린으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세계 190개국으로의 진출을 통해 가장 강력한 글로벌 동시 유통의 기반을 만들었다. VOD(Video On Demand) 방식의 구독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편성 기반의 방송 미디어보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며 기존의 미디어 지형에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넷플릭스의 빠른 성장은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OTT로의 진입과 콘텐츠 투자 경쟁을 촉발했다. 월 단위 구독이라는 특징에서 온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 선택의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스튜디오가 연계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 투자의 확대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특히 이러한 적극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 경쟁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제작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기존의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콘텐츠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다른 전략을 취한다. 190개국이라는 지역으로 확장된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로컬 콘텐츠의 공급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콘텐츠만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지역의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영상 콘텐츠 분야에선 로컬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넷플릭스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전략을 취한다. 각 권역에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고 주변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전략 지역에 대해서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OTT의 로컬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전략은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드라마 전문 제작사의 약진이라 할 수 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출 규모의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규모는 총 7억 1,800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치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출액 구성의 변화다. 2021년은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수출 실적은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낸 시기로, 2억8,477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치 기준으로 지상파(2억 1,333만 달러)와 채널 사용 사업자(2억 1,990만 달러) 각 사업자의 실적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특히 드라마 제작사가 영상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을 잘 보여준다.

드라마 전문 제작사가 본격적인 콘텐츠 수출의 주역으로 부상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글로벌 OTT를 통해 달라진 영상 콘텐츠의 수출 구조와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OTT 서비스가 빠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 방송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OTT를 통한 해외 유통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새로운 ‘방송 한류’의 사례들은 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대표되는 OTT 독점 콘텐츠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전통적인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 방식에서 OTT 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통한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OTT로의 직접 수출로의 전환이 나타난 것이다(이성민, 2022; 김윤지, 2021.4.5).

과거에는 드라마 전문 제작사들이 제작사들은 콘텐츠의 제작과 편성, 수출에 있어서 방송사와의 연계 필요성이 높았다. 일단 국내 방송에 편성이 되어야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고, 해외로 팔기 위해서도 결국은 해외 방송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므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도 큰 노력을 들여야 했다. 그런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들이랑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취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영상 산업에서 글로벌 OTT가 만들어낸 변화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유통 경로보다, 세계 곳곳에 직접 진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의 해외 유통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드라마 전문 제작사들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콘텐츠의 유통 범위의 확장이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지형 변화

1. 스토리 IP의 중요성 확대와 IP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의 증대

먼저 살펴볼 변화의 흐름은 웹툰, 웹소설과 같은 스토리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OTT를 통해 공개되는 콘텐츠들의 라인업에서 웹툰이 원작이 되는 콘텐츠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지옥>이나 디즈니플러스의 <무빙>, 애플TV플러스의 <닥터브레인>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스토리IP의 활용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검증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큰 비용이 필요한 영상화가 갖는 흥행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에 웹툰 등을 통해 형성된 팬덤은 공개될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자이자 전파자로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홍보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영상화된 작품이 공개되면, 이와 연계하여 원작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스토리IP의 활용은 해외 서비스에 대한 IP 유출의 우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특성이 있다. 영상화 권리를 넘겨주더라도, 원작 IP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전개의 권리는 여전히 국내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콘텐츠로 이야기를 확장하고 연계하는 '세계관' 전략의 확대 속에서 스토리IP를 활용한 경험 확장의 기회를 늘려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시각적 경험의 극대화를 통해 좀 더 단기간에 팬덤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IP 확장에서의 상호 이익을 높일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야기를 창출하고(웹소설) 시각화(웹툰)할 수 있다. 또한 웹툰과 웹소설이 서비스되는 가운데 미리 이용자로부터 이야기의 힘을 검증받을 수 있고, 사전에 형성된 팬덤은 차후 영상화된 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참여자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웹툰의 경우, 미리 영상화된 장면을 시각화해서 공유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화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돕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경향에 더하여 CG/VFX 기술의 발전으로 웹툰에 담긴 다양한 상상력을 시각화하는 것의 제약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웹툰 IP의 활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IP콘텐츠는 이미 치열한 한국의 웹툰 시장에서 검증받은 작품이란 점에서 이야기의 우수성을 갖춘 원천으로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혀나가는 가운데서, 한국 영상 콘텐츠는 소재의 다양성이나 영상화의 기술적 성취 등에서도 복합적인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왔고, 이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스토리IP 생태계가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은 앞으로의 영상 콘텐츠 지형의 변화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국내 스토리IP의 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왓패드와 래디시라는 북미 지역 중심의 웹소설 서비스를 인수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왓패드와 같은 서비스는 현지의 작가들이 자신의 웹소설을 올릴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확보하는 스토리IP의 '국적'이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스토리IP 중심의 영상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 및 팬덤, 창작자와의 연계를 넓혀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제작 역량'에 한정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은 더욱 확장된 스토리IP 생태계의 일부로서 유기적인 기업 간 협력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IP를 활용한 부가 사업의 확장의 중요성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콘텐츠IP 활용에 있어서 라이선싱과 상품화를 통한 굿즈 등의 부가사업의 확장은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콘텐츠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시장은 기존의 영유아 중심의 완구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상품군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 과거보다 대중적인 브랜드 소비가 줄어들고 개별적인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콘텐츠IP를 활용한 상품들은 팬덤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새로운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콘텐츠IP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 지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P 중심의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이 지금 확보된 기회를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더욱 확장된 IP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기획과 산업 간 연계의 노력을 확대해나가기에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을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더욱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OTT 시대, 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 시스템의 변화: 콘텐츠IP 중심의 스튜디오화

OTT가 콘텐츠 유통 및 소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제작 영역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구조는 편성이라는 유통 측면에서의 권력을 확보한 방송사업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콘텐츠 제작사는 편성의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제작비 회수의 기회가 방송사업자의 편성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OTT라는 새로운 온라인 기반 콘텐츠 유통의 확대는 콘텐츠 제작 부문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

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는 해외 시장으로의 직접 유통을 통해 제작사에 더 큰 수익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의 기회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 과거에 비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OTT를 통한 독점적 유통의 성공은 방송의 절대적 영향력에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SVOD) 형태의 콘텐츠 소비 방식은 콘텐츠 IP의 중요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이는 산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용자의 서비스 간 이동이 용이한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콘텐츠 IP'와 '연계 중심'의 기획이 중요해졌다.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주체와 자원을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포함한 전략적 유통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주체인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찾을 수 있는 스튜디오 시스템의 원형은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적 계열화를 주로 의미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콘텐츠의 대량 생산, 인력의 효율적 분배, 체계적인 제작 관리 등에 있다. 한국형 스튜디오 시스템의 원형은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찾을 수 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CJ E&M의 드라마 제작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자회사이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출범 당시 문화창고와 화앤답픽처스, KPJ 등 독립제작사를 인수하고, 스스로는 일종의 중간지주회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제작 시장은 작가와 감독 중심의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주도하게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일은 스튜디오가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존의 방송사-독립제작사의 구조에서 발생하던 편성 우위의 구조를 탈피하고, 콘텐츠 창작의 양적 규모를 늘림으로써 제작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했다. 제작 부문은 독자적인 프로덕션에서 담당하되, 정규화된 기획 PD들이 지속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단일 방송사가 아닌 다수의 채널과 협상하며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등장은 기존의 방송사-독립제작사의 구도와는 다른, 콘텐츠 제작의 전문화, 대형화된 전략의 적극적 추진의 시작을 의미했다(공희정, 2020). 스튜디오가 중심이 되어 다수의 제작사와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스튜디오드래곤은 연간 제작 편수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조영신, 2018).

한국형 스튜디오 시스템은 OTT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 기획-제작 부문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스튜디오S, SLL과 같이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연계된 제작 조직이 스튜디오로 진화하거나, KT의 스튜디오 지니와 같이 통신사업자의 가치사슬 연계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의 형태를 보이는 주체의 등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OTT 서비스 웨이브도 자체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스튜디오 웨이브를 2021년 출범시킨 바 있다. IT 플랫폼 기업 네이버도 웹툰 등 스토리IP 역량을 영상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스튜디오N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스튜디오 시스템은 기획-제작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스튜디오가 콘텐츠 기획과 IP 확보 및 유통 전략을 총괄하고, 독립된 제작 본부와 연계된 제작사가 자율성을 갖고 창작 활동을 전개한다. 인수합병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제작 역량을 내재화하고, 기획 프로듀서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플랫폼과 스튜디오의 관계 측면에서 스튜디오의 협상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다수의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스튜디오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특히 기존에 개별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사업자들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스튜디오가 그 중간 지대를 점유하며 다수의 제작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전략의 다각화를 들 수 있다. 콘텐츠 창작은 개별 제작 부문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콘텐츠의 국내 및 해외 유통, 기존 라이브러리의 활용, IP 확장 및 활용 등 IP비즈니스 전략의 실행 등을 스튜디오가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독립제작사는 제작 영역에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와 IP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확장을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이를 스튜디오가 주도해서 수행함으로써 사업적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튜디오가 주도하는 콘텐츠 제작이 확대되면서,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콘텐츠IP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의 OTT 서비스는 주문형 영상이 중심이 되는 구독형 서비스, 즉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를 제공하고 있다. SVOD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구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한 라이브러리의 구축과 구독을 유도하게 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연계소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IP는 기존 원작 팬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작품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지속적인 시즌의 확장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확대하고 연계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OTT의 핵심 경쟁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콘텐츠IP 측면에서 한국형 스튜디오 들은 대부분 기획 단계에서 전략적인 IP의 선정과 확보, 유통 채널 확보 단계에서 IP 권리에 대한 협상, 그리고 이후의 IP비즈니스 확장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유연한 IP 전략의 수행을 위해선 개별 유통 플랫폼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둔, 중간 위치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콘텐츠IP 부문에서 스튜디오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개별 독립제작사로선 다루기 어려웠던 IP 전략을 전담하면서, 스튜디오는 콘텐츠IP 중심의 영상 콘텐츠 시장 재편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다.

3.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변화

앞서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변화의 핵심 요소를 ‘스튜디오화’란 관점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도, OTT의 성장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튜디오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향력이 강력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난 변화의 핵심은 OTT가 핵심적인 콘텐츠 유통 수단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메이저 스튜디오 다수가 자체 OTT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변화다. 월트디즈니는 디즈니플러스를, 워너브러더스는 HBOmax를, 파라마운트는 파라마운트플러스를, NBC유니버설은 피콕(peacock)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촉발한 OTT 서비스, 즉 온라인 스트리밍 중심의 시장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수직 계열화된 제작-유통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OTT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계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OTT를 서비스하지 않는 스튜디오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OTT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9조5천억 원에 MGM을 인수했다. MGM은 영화 <007> 시리즈와 <록키> 시리즈 등 다수의 콘텐츠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콘텐츠IP 프랜차이즈의 권리를 확보하면서 제작 경쟁력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OTT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가치에 주목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들은 치열한 콘텐츠 경쟁 속에서 IP 자원과 제작 역량을 갖춘 스튜디오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투자 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산업 지형 변화의 핵심은 콘텐츠IP 권리와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제작 역량을 흡수하며, OTT 중심의 유통 역량을 높이는 노력의 확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OTT 서비스와 스튜디오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사례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OTT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스튜디오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 기획에 특화된 스튜디오란 중간 조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가치사슬의 연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3개 기업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KT그룹의 ‘스튜디오 지니’는 KT그룹의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모아서 투자, 기획, 제작, 유통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이다. 웹소설·웹툰 전문 자회사 ‘스토리위즈’를 통해 우수 콘텐츠IP를 발굴하고, 제작사들과 협력을 통해 영상화를 진행한다. ‘스튜디오 지니’의 출범은 기존에 IPTV가 중심이 되었던 유료방송 중심의 콘텐츠 유통의 흐름이 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송사업자 JTBC 계열의 스튜디오 ‘SLL’은 기존의 JTBC 스튜디오를 개편한 것으로, JTBC 방송 채널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글로벌 시장 개척을 시도하는 보다 확장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LL의 특징 중 하나는 15개의 독립된 제작사들을 ‘제작 레이블’이란 이름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체 OTT 서비스가 없는 스튜디오라는 한계를 창작 영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CJENM은 ‘멀티 스튜디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022년 4월 ‘CJENM 스튜디오스(STUDIOS)’라는 새로운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스튜디오드래곤’과 ‘웍스시즌’을 포함하는 3대 축으로 구성된 ‘멀티 스튜디오’를 구축한 것이다. ‘CJENM 스튜디오스’는 국내외 OTT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 장르 콘텐츠 기획개발과 제작을 맡게 되며, 스튜디오드래곤은 드라마 장르 중심의 기획·제작을, 글로벌 스튜디오인 ‘웍스시즌’은 미국 현지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웍스시즌’의 인수 사례는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유통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스튜디오가 중심이 되는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시장의 재편은 콘텐츠 경쟁력 중심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상징한다. 유통 부문이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화된 구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방송, 통신 등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들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다수의 콘텐츠 제작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전까지의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제작·유통 구조는 과점화된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기획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를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통하며, 개별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사업자와 연계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OTT의 등장으로 유통 플랫폼의 경로가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스튜디오’들은 기존 방송사업자의 위치에서 제작의 자원들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콘텐츠IP 전략의 기획과 수행의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OTT가 가져온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스튜디오 시스템의 확산이라는 콘텐츠 기획·제작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 지형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가고 있다. ‘레이블’과 같은 형태로 독립제작사들과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는 스튜디오의 전략은 마치 KPOP 산업에서 주요 기획사가 중심이 되는 산업 지형 변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이 가진 핵심 경쟁력이 단순히 ‘좋은 노래’가 아닌 보다 종합적인 아이돌 프로덕션의 역량이었던 점에서 영상 산업의 미래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수의 제작 부문의 연결을 통해 달성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이어가면서, 그 안정성 위에서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스튜디오들에 놓인 핵심 과업이 될 것이다.

IV. 변화의 방향과 주요 쟁점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실제 한국 방송영상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글로벌 동시 유통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콘텐츠의 생산자는 적극적으로 해외의 수용자를 시야에 넣게 되고, 더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을 시도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로컬 콘텐츠의 소비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취향의 지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새로운 대중문화의 지형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일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콘텐츠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방식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로컬 콘텐츠의 다중적 소비가 확대되는 방식의 새로운 문화 지형의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1.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재편 속 한류 지형의 변화

1) 콘텐츠의 변화: 글로벌 지향의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글로벌 OTT를 통해 나타난 콘텐츠 산업의 변화는 창작 자체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가 가진 제작의 특징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라는 단위뿐 아니라 장르라는 단위를 고민한다. 한국이란 국가 가입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좀비나 로맨스와 같은 특정한 장르를 선호하는 가입자의 구성 역시 중요한 숫자이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국가에선 적은 수요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르물에 대한 과감한 제작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 시장만을 생각했을 때는 좀비나 서바이벌 장르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한계가 있지만, 전 세계의 장르 팬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서바이벌), <지금 우리 학교는>(좀비)과 같은 새로운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었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VOD 형태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의 특성상, 유사한 장르의 콘텐츠 연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더불어 좋은 성과를 거둔 작품으로 <아리스 인 보더랜드>란 작품이 있다. 일본에서 제작된 해당 작품은 서바이벌 장르로서 일부 마니아의 관심을 받았다가, <오징어 게임>의 흥행 이후 이와 연계되어 추천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이용자의 관심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고유하고 창의적인 요소와 해외 팬덤의 기호를 결합하는 방식의 작품

을 만드는 방식은 넷플릭스가 만들어내는 이중의 상품화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강혜원·이성민, 2022). 장르 팬덤에게 인기가 있는 보편성의 틀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넷플릭스는 ‘취향 중심의 현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향 중심으로 뚝족한 제작 투자를 감행하면서, 글로벌 텔레비전으로서 적극적인 자막과 더빙을 통해 보편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영상 한류는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류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2) 글로벌 미디어스케이프의 변동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OTT 중심의 영상 콘텐츠 창작-소비 지형의 변화와 영상 한류의 확장은 앞으로 어떤 방식의 대중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는 데는 영상 미디어의 국제 유통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했던 아르준 아파두라이(1996)의 논의가 좋은 기반이 된다. 아르준 아파두라이(1996)는 국민국가(Nation)를 넘어선 유동적 정체성, 즉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의 구성에서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와의 관계를 탐구한 바 있다. 그는 ‘풍경(landscape)’이란 은유를 통해 기존에 단단하게 묶여 있던 미디어-풍경과 인종-문화적 풍경을 상대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화 과정에서의 문화-미디어의 변화에서 미디어라는 풍경이 가져올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아파두라이(1996)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가 우리에게 정체성의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OTT가 만들어낸 문화 소비의 지형을 검토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로컬의 콘텐츠들이 새로운 정체성의 재료로서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즉,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문화적 정체성 재료의 공급이 글로벌 범위로 확장되면서, 세계인의 인종-문화적 정체성의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190개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효율성을 위해 선택한 권역별 장르의 리더십을 갖는 지역의 특정 콘텐츠 장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고, 한국은 특히 드라마 부문에서 이러한 투자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권역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전 세계에 배포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미디어의 풍경(mediascape)을 보다 다양한 지역의 색깔이 담긴 콘텐츠로 채우고 있다.

특히 지금의 글로벌 OTT 중심의 영상 콘텐츠 환경 변화는 더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들이 각 문화 코드의 특수성 상품화 전략과 글로벌 보편성의 발굴(강혜원·이성민, 2022)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미디어스케이프의 변동은 전통적인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들은 더 다양한 타자의, 보편적 시선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코드’화 된 형태로 상품화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OTT의 확장이 미디어스케이프의 지형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은 OTT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용자가 미국 혹은 자국 콘텐츠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창작된 콘텐츠들에 노출될 기회를 얻고 있다. 과거에는 낯선 국가의 문화가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면, 글로벌 OTT 시대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적 코드들에 대해 더 우호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한류가 변화하는 미디어스케이프의 핵심적인 풍경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할인의 인식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얻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글로벌한 대중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고, 한국의 영상 콘텐츠는 그러한 다양한 지역 문화 중에서도 특히 변화의 혜택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글로벌 대중문화의 지형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감각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전통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콘텐츠IP를 넘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IP의 부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쟁점

1) 글로벌 OTT와의 콘텐츠IP 계약 방식을 둘러싼 갈등

글로벌 OTT 중심의 산업 변화 속 가장 주목을 받는 쟁점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확산한, 콘텐츠IP 유출을 둘러싼 고민이다.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흥행을 통해 영상 콘텐츠 한류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해당 콘텐츠의 IP 권리 전부가 넷플릭스에 양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넷플릭스와의 ‘오리지널’ 콘텐츠 계약 시 IP 권리를 넷플릭스에 양도하는 방식의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내 콘텐츠IP가 지속해서 글로벌 기업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 드라마뿐 아니라 2023년 2월 글로벌 흥행 1위를 한 예능 콘텐츠 <피지컬: 100> 역시 IP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추가하고 있다.

콘텐츠IP를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1) 투자 위험의 부담이 없고 (2) 일정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고, (2) 후속작 제작이나 관련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김규찬 외, 2022).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콘텐츠IP에 대한 계약의 방식은 투자의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계약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상세한 계약의 방식은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자의 IP 관련 계약의 방식은 국가와 산업별 관행과 협상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란 점에서, 정책적 대응을 위한 보다 정교한 지형의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의 전 세계 독점 배포권과 해당 콘텐츠IP를 활용한 콘텐츠 확장(시즌제 등)과 부가 사업(예능, 게임 등 타 장르로의 확장, 라이선싱 상품 제작 등)의 확대 등의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콘텐츠IP 권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려는 계약의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다만, OTT 주도의 콘텐츠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점차 전 세계 독점권을 고집하는 대신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전략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김조한, 2023.10.27.)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기존의 정책 수단과 결합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와 독립제작사 지원 정책을 결합한 IP 확보 지원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유럽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AVMSD)을 자국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 부과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콘텐츠IP 권리를 독립제작사가 보유하도록 하는 기존의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 단, 계약의 방식에 따라 IP 권리의 양도 범위와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지옥>을 만든 연상호 감독은 넷플릭스가 원작 IP의 영상화 권리를 확보한 것이고, 원작 IP 자체는 작가에게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외주제작 진흥 정책과 자국 투자 의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완전한 오리지널(full original content)’ 콘텐츠 방식의 계약 비중을 낮추면서도 자국으로의 일정 수준의 콘텐츠 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OTT에 대한 콘텐츠 투자 의무 부여의 어려움이다. 글로벌 사업자의 OTT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유럽과 달리, 국내 OTT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 한국의 상황에서 OTT에 대한 선부른 투자 의무 부여는 국내 사업자에게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 방송사-독립제작사 간의 콘텐츠IP 확보에 대한 명시적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독립제작사가 콘텐츠IP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외주제작 비율을 규정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의 권고 수준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OTT뿐 아니라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응과 스튜디오화를 둘러싼 쟁점

글로벌 방송-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과거보다 국경을 넘는 콘텐츠의 교역에 드는 거래비용이 완화되고 있다. 비록 엔데믹 전환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의 영향력 확대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역별 글로벌 OTT를 꿈꾸는 사업자들 역시 많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넓은 단위의 묶음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 영상 콘텐츠의 품질과 팬덤 확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란 점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는 다수의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디즈니 등 아시아 등에서의 글로벌 사업의 확장성을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영상 콘텐츠의 파급 효과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의 지속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 해외 유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했고, 한동안 이러한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드라마 부문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장애 요소가 많이 완화되어 있다. 다만 예능과 같은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먼저 콘텐츠 창작의 관행에 있어서 아직 국내 시청률 등의 지표에 대한 종속성이 높고, 이로 인해 여전히 최종 편집을 방송 일정에 딱딱하게 진행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원활한 해외 유통에 필요한 적절한 후반 작업(번역) 등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다. 국내 맥락에 많이 의존적인 자막의 활용 역시 번역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즉 해외 진출 자체의 사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마켓 참가, 번역, 후반 작업 등)을 확대하면서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직접적으로 해외 진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음악 등 저작권 문제다. 국내외 해외의 저작권 이용 허락의 요건이 다르므로, 해외 진출을 위해선 전면적인 음악 개편 등의 재제작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작권 컨설팅, 재제작 비용 지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전용 음악(OST) 제작 활성화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 작품이 해외 진출 이후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 확대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해외 문화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플랫폼의 해외 진출 관점에서는 스튜디오화를 통한 IP 권리 구조의 단순화가 해외 진출 과정의 복잡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또 스튜디오화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기반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도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다만, 스튜디오화가 자칫 투자 결정의 획일화 등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향후 스튜디오화가 확대되면, 기존의 제작사-플랫폼 관계와 비교해 스튜디오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공정 생태계’에 대한 관점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V. 맺음말

콘텐츠IP의 부상은 글로벌 OTT의 성장이라는 방송영상 산업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와 맞물려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산업 경계는 허물어지고,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열어준 경로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대, 해외 직접 진출에 대한 전제를 고려하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의 확산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던 콘텐츠 수용자 집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기존에는 영화, 드라마, 만화와 같이 장르에 따라 분명한 수용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장르의 법칙과 코드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만화, 드라마, 영화와 같은 콘텐츠 소비가 점차 단일한 스크린에서 끊임없이(seamless)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IP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미디어로 연속적으로 같은 집단이 소비하는 것이다. 이때 콘텐츠 수용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더 이상 미디어가 아니라 콘텐츠IP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이용자 행태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고려한 콘텐츠 경쟁력을 요구한다. 결국 이 조합의 최적화를 두고 다양한 모델 간 실험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콘텐츠와 플랫폼의 권력이 바뀔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IP가 중심이 되는 그림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IP의 성장은 콘텐츠 발견성(discoverability)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콘텐츠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콘텐츠로 사람들을 일정하게 모아 줄 수 있는 미디어의 권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일정규모의 팬덤을 가진 콘텐츠IP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게 된다.

핵심은 IP 경쟁력을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콘텐츠IP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콘텐츠IP 기반을 가진 기업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고, 영상 콘텐츠의 제작 부문은 ‘스튜디오화’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 경쟁력’이 지금의 핵심 자원이란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콘텐츠IP라는 요소의 중요성 확장에 따른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형 변화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향후 콘텐츠IP를 중심으로 미디어 영상 산업의 기존 요소들의 재배치라는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이성민(2022). “넷플릭스의 초국적 콘텐츠 소구 전략: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장르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이중적 상품화 구조 분석”, 『언론과 사회』, 30(3), 5-41.
- 김규찬 외(2022). 『방송영상 콘텐츠 I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김윤지(2021.4.5). OTT 산업과 K콘텐츠 수출: K드라마, K무비를 중심으로, 『K 뉴딜 산업 INSIGHT 보고서』, 1호, 한국수출입은행.
- 김조한(2023.10.27.). 프랑스 최대 콘텐츠 마켓에서 본 콘텐츠 시장의 미래, 씨네21
- 아르준 아파두라이(1996). 『고삐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 현실문화연구
- 이성민(2022). 방송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자료.
- 이성민·이윤경(2016).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영신(2018). <스튜디오 드래곤>, 한국 영상 제작의 새로운 신호탄을 쏘다, 『방송 트렌드&인사 이트』 2018년 1호(vol.14), 한국콘텐츠진흥원

* 논문 초록 *

이 글에서는 이러한 IP의 중요성 확대가 가져오는 산업의 변화를 특히 스튜디오화의 문제에 주목해서 검토한다. 글로벌 OTT의 성장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했고, 규모의 확대 속에서 IP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이어졌다. 스튜디오화는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상징하는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변화의 핵심 요인인 콘텐츠IP의 개념을 살펴보고, 글로벌 OTT 중심의 산업 변화의 지형을 살펴본 뒤, 이로 인한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변화의 양상과 그로 인한 주요 쟁점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콘텐츠IP의 부상은 글로벌 OTT의 성장이라는 방송영상 산업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와 맞물려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산업 경계는 허물어지고,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IP 측면에서 한국형 스튜디오 들은 대부분 기획 단계에서 전략적인 IP의 선정과 확보, 유통 채널 확보 단계에서 IP 권리에 대한 협상, 그리고 이후의 IP비즈니스 확장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개별 독립 제작사로선 다루기 어려웠던 IP 전략을 전담하면서, 스튜디오는 콘텐츠IP 중심의 영상 콘텐츠 시장 재편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IP는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 경쟁력’이 지금의 핵심 자원이란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방송대 U3A 운영 사례 연구*

이 해주 (교육학과 교수)**

A case study on the KNOU U3A program

Lee, Hae Joo

◁ 목차 ▷

I. 서론	V. 맺는말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방송대 U3A 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운영	부록
IV. 방송대 U3A 운영 결과: 성과 및 반성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3%(737만 명)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게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1년).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중 1위로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이르는 속도가 영국은 53년, 프랑스는 39년, 미국은 20년, 일본은 13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22).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긴 세월에 걸쳐 고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적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사회와 가정의 노인부양부담을 가중시키며, 당사자에게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으로 이어져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 이 논문은 2021년, 후반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향후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2만 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 이는 개인적인 소득감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산될 수 있다(김수영 외, 2017).

고령화는 그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자연스런 인간의 변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발전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은 사후에 하기보다 사전에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면 그 충격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 학술적 차원에서도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황금 인생기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Tews, 1993; 한정란 외, 2009). 또한 유엔에서는 2002년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PA)’을 발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과 함께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노년기의 빈곤해소, 안전한 노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2년에는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고령화정책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 ‘생산적 노년(productive age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활동적 혹은 생산적 노년이라는 용어는 경제나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활기차다는 의미에서 활동적일 수 있다. 활동적 노년과 관련된 주장들은 노년기의 삶도 국가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립적으로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적극적인 노년상을 지지하는 담론에서 출발한다(Walker & Maltby, 2012). 이들은 노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기여가 가능한 활동인구로 간주하고 복지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신노년’이라는 담론과 연결되면서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적 논의로 이어진다.

평생교육적 차원의 노인교육에서는 앞으로 노인을 보호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돕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의식화(empowerment)를 위한 노인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노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 안에 다양한 집단이 있고 그들 집단의 특성에 따라 더 중시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미식, 2018).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은 여전히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들을 위한 교육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집단에 따른 교육요구도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전수경, 2015). 2021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한국교육개발원, 2021)에 따르면, 25~30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5.5%로 나타났으나 60~69세의 참가율은 22.1%, 70~79%의 참

여율은 17.7%로 연령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참여율이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노인들의 교육기회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또 다른 논문에서는 50대 이후의 신노년들은 지식, 인력개발 형태의 교육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며 고령노인들의 경우에는 소소한 일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배움터를 선호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집단간 선호하는 학습내용과 방식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한정란 외, 2011; 정숙, 이해주, 2022).

그러나 현재의 노인평생교육은 소외계층 중심의 문해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위 ‘신노년’이라 불리는 젊은 노년층들의 학습요구를 채워 줄 교육기관은 없는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의 노인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6.7%가 대졸 출신이며 평균 경력기간 12년 정도를 갖고 있으며, 국내 토지의 42%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2017)의 발표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정년 후 일선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며(한정란 외, 2011), 사회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한다(이부일, 기영화, 2009). 정년을 맞이하게 된 베이비부머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시간은 증가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적고 각 집단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도 거의 없어 노년기를 무료하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노인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들어간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노년들의 학습을 촉진시켰으며, 대학들이 어떤 시도들을 해나갔는지 살펴보았다(이해주, 2017).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U3A 프로그램과 같은 노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방송대가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국립대학인 방송대의 사회적 기여라고 판단하여 서울지역대학에서 시범적으로 U3A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았다. 본 사례연구는 방송대 U3A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운영, 평가 결과를 기록해 두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의 연구방법이나 분석틀에 기초하기보다는 U3A 관련 이론과 함께, 추후 방송대 지역대학에서의 U3A 운영을 위해 서울지역대학에서 실시했던 U3A 프로그램을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U3A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에서의 U3A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2023년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지역대학에서 운영한 U3A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지를 통해 제시된 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신노년을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¹⁾

1. U3A의 의미와 3기 인생(Third Age)

U3A란 ‘University of the Third Age’를 의미하는 것으로 3기 인생을 위한 대학을 말한다. U3A란 용어는 3기 인생을 위한 대학의 약자로 은퇴한 노인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주고 보다 노년기를 의미 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학,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University’란 단어의 고전적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학의 의미보다는 ‘지적 성장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한다. 중세에는 대학의 의미가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집단이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Ireland U3A Brocher, 2015). 그래서인지 U3A는 일반적인 대학의 형식적이고 학문적 과정과는 달리 학습의 과정을 즐기고, 노년기를 성찰하면서 생성적 활동(generative activity)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의 U3A 프로그램은 각국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또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고 있다. 장소도 대학이 아닌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평생교육기관이 활용되기도 하며 노인들의 자원활동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편 ‘3기 인생(Third Age)’이란 용어는 ‘자녀를 출가시키고 은퇴 후 새로운 관심과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 후반의 시기’를 지칭한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라스렛 교수는 그의 저서, ‘삶의 새로운 지도(A Fresh Map of Life)’에서 인생의 시기를 4세대로 구분하였다(Laslett, 1991). 1기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시기, 2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을 형성, 부양하며 자아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기, 3기는 은퇴로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가족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시기, 4기는 그 이후의 시기로 건강하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지내는 마지막 시기를 의미한다. 이 중 ‘제3기 인생(Third Age)’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한 후(퇴직 후),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시간을 갖게 되고 실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시기’로 인생의 또 다른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기 인생’이라는 용어를 라스렛 교수의 ‘Third Age’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U3A 활동은 노인들도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전히 지적 욕구가 강하고, 무엇인가 배움에 적극적이며 주체로서 참여하고자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유럽지역에서는 은퇴 후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U3A 활동이 이루어졌다. 1919년 영국의 성인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Report of the Adult Education Committee)에서는 성인들도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인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Felce & Perry(1995)는 노인들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행복하고 성공적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eing)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양하겠지만 Rowe & Kahn(1998)은 몇 가지 전제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 낮은 질병 및 질병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며 둘째로는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의 유지, 셋째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학습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예컨대 박성정(2013)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학습참여가 정신적, 심리적

1) 이해주(2017). “제3기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의 탐색”에서 일부 발췌, 수정하였음.

만족과 육체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됨으로써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년기의 학습참여는 꾸준한 신체적, 인지적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질병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으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고 직업역량 함양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공적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체 국민을 위한 노인교육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이 마련되어 국가는 계속 교육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학습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법제화시켰다. 그리고 1965년 유네스코 성인교육 추진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82년을 ‘세계 노년의 해’로 정하면서 노인교육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다(황영희, 201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노년을 위한 준비교육을 대학들이 나서서 U3A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 유럽에서의 U3A 활동 사례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7세기부터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가가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장려하였다(나항진, 김형수, 2012). 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에게 교육을 개방함으로써 그들에게 독립된 사고방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함양하게 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학 차원에서는 1973년 Toulouse 대학에서 처음으로 UTA (l'Universite du Troisieme Age)를 만들어 3기 인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68년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Toulouse 대학은 지역사회 퇴직 노인들을 위한 노년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강좌는 개설되자마자 노인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100여 명의 노인이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노인을 위한 강좌를 앞다투어 개설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U3A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프랑스 UTA의 특징은 대학이 선도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였으며 대학평생교육(extramural activities) 차원에서 다소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강의의 내용은 인문학이나 예술, 역사 등 주로 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공개강의, 대학강의, 워크숍, 클럽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정부와 대학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시작했으나 점차 자기 부담원칙으로 변하면서 참여가 저조해졌다. 프랑스 최초의 노인대학인 UTA는 상실감과 신체적 퇴보 등으로 의존적이고 고독한 노인세대를 대학의 지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끌어내어 노년기 자아실현과 자율성 함양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UTA가 교육과 경제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Feliciano & Montserrat,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욕구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 대학이 지역의 일반 노인들을 위한 강좌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의 노인교육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UTA가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다른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즉, 영국의 U3A는 대학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조적 학습단체로 변모하게 된다(Feliciano &

Montserrat, 2012). 이는 대학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재정적 지원여부에 따라 U3A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습자의 요구반영 정도도 학교가 갖게 됨으로써 주체적인 학습모임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U3A를 운영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조적 학습모임 (self-help)으로 발전시켰다(Laslett, 1991). 1982년, 캠브리지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 영국에는 1,035개에 이르는 U3A가 개설되어 약 400,0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www.u3a.org.uk). 학습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런던 U3A의 경우에는 지역역사, 책읽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등을 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하는 대면수업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도 있고 야외에서 다른 동료들과 걷는 모임(walking group)이나 사교모임 등도 있다. 특히 영국의 U3A는 자율이라는 가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 없이 자신들이 회비를 걷어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또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 총무 등을 두고 있으며, 학습그룹별로 코디네이터가 있어 강의 진행을 돕고 있다. 이들 역시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었으며 연회비는 약 20유로 정도이다(London, U3A brochure, 2016).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에는 Senior Citizen's Parliament를 설립하게 되었고 Age Action이란 단체가 설립되어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잡지(Senior Times)도 발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더블린대학(DCU)에서는 지역의 민간 U3A 단체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지역의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U3A를 운영할 경우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DCU 자료집, 2016). 이곳에서는 AFU(Age-Friendly University) 라는 명칭으로 U3A와 유사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관련 특강이나 노인들의 학습모임을 위한 공간을 빌려 주기도 한다. 이 대학의 AFU 프로그램은 2012년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EHEA)에서 교육 전문가 47명이 모여 앞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이 전통적인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군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면서 특히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AFU에서는 지역의 NGO와 연계하여 참여적 노년, 경력개발, 창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며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건강,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세대 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이해주, 2017).

3. 시사점

유럽의 U3A 사례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노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이 나서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 국가의 경우, 노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노인들에 의한, 노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 먼저 나서서 강좌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의식화(empowerment), 세력화를 위한 교육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비록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면서 U3A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지만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하여 영국

의 경우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 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면서 지역사회와 젊은이들을 돌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선배시민(senior citizen)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Ⅲ. 방송대 U3A 운영계획 및 과정 2)

1.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방송대 U3A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이들의 숫자가 2026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이 노년기를 보람되고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노년에 대한 관점을 보다 긍정적이고 독립적으로 갖도록 하며 사회의 선배시민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식과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대는 국립대이며 전국에 지역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졸업생이나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한다면 노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에서는 방송대 졸업생과 지역사회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U3A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 봄으로써 향후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한 노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추진목적 및 운영방향

○ 방송대 U3A 프로그램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지역주민과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삶의 지혜를 나눌 장(場)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준비하도록 함이다.

둘째, 자조적으로 학습하는 U3A 모형을 도입하여 참여자 중심의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지역대학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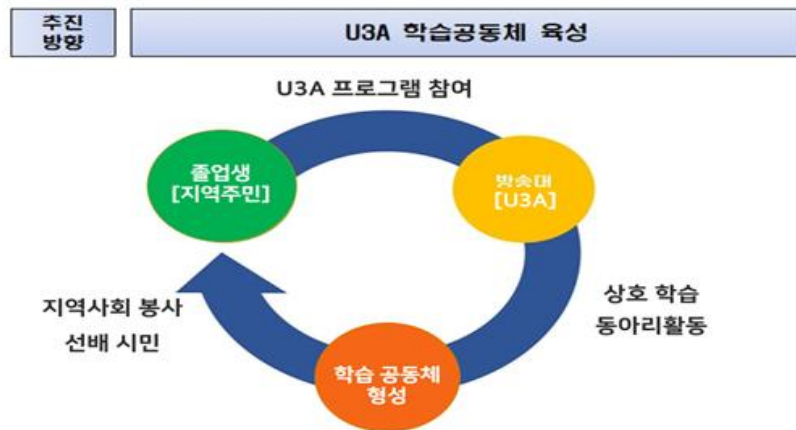
셋째, 은퇴 준비 및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독립적이고 적극적 노년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학습공동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후배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선배시민상(像)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방송대 U3A의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교시는 노년의 의식화(empowerment)를 위한 강의로, 노년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기획한다.

2) 본 절은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기술했음.

-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을 초빙하여 다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교시는 자신의 학습요구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한다.
- 3교시는 동아리 활동으로 학습자들끼리 상호협조하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촉구한다.
- 각 교시는 노년기의 집중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매 교시 50분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은 동아리 활동이므로 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



<그림 1> 방송대 U3A 운영방향

2. 방송대 U3A 운영개요

가.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

- 프로그램의 주 대상: 방송대 졸업생과 지역민 (노년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운영기간: 2023. 11. 1.(수)~12. 20.(수), 14:00 ~ 17:00 / 주 1회 총 8회로 기획
 - 장소: 서울지역대학
(출석수업과 기말시험 사이에 빈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를 활용)
 - 강사진 : 강사는 방송대 교수, 명예교수, 외부강사 및 졸업생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운영진: 방송대 평생교육사협회원 중 서울지역의 위원으로 자원을 받아 구성함
(추후 경기지역에서도 운영할 경우를 위해 경기지역 위원도 참여함)
- 위의 운영개요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방송대 U3A 운영 사례 연구

<표 1> 방송대 U3A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지역주민, 방송대 졸업생 외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장 소	서울지역대학 강의실	
인 원	100명 / 6개 교실 운영	
강연자	방송대 전·현직 교수 및 외부 전문강사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12명의 운영진으로 구성	방송대 평생교육사

나.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진

- (1교시: 강연) U3A와 노년기 생애학습을 주제로 총 8강 강연 진행
- (2교시: 교육 및 학습) 노년층의 정보문해력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영어그림책 읽기 / 시니어 體·仁·智 교육
- (3교시: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독서반 / 미술반 / 기타반 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공동체 육성
- 1~3교시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1교시 강연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진(장소: 서울지역대학 501호)

차수	일정	주요 강의내용	강연자
1	11.01.(수)	U3A란? : 방송대 U3A의 의미와 전략	이00 교수 (교육학과)
2	11.08.(수)	선배시민론 : No人 인가, KNOW人 인가?	유00 교수 (사회복지학과)
3	11.15.(수)	노년기의 보건과 건강	정00일 교수 (보건환경학과)
4	11.22.(수)	노년기 생애학습	정00 교수 (교육학과)
5	11.29.(수)	노후 재테크 관리는 어떻게 할까?	황00 교수 (전 금융감독원)
6	12.06.(수)	노년기 직업정보 및 경력개발	이00강사 (성동 50+센터장)
7	12.13.(수)	학습공동체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과 실천전략	백00 강사 (노원구평생교육사)
8	12.20.(수)	성공적 노년과 자원활동	이00 교수 (교육학과)

- 2교시 강의 제목 및 강사 (장소: 전산실습실. 501호, 503호)

<표 3> 2교시 선택 강의 구성표

주요 강의내용	강사	비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00 교수 외 2인	방송대 교육학과, 미디어학과
영어그림책읽기	이00 교수	방송대 명예교수
시니어 體·仁·智	정00 강사 외 3인	지역사회교육 강사진

- (3교시) 학습동아리 활동내용 및 강사 (장소: 501, 502, 503호)

<표 4> 3교시 동아리 활동 강의 구성표

주요 강의내용	지도강사	비고
독서토론반	이00 교수 외 1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미술반	김00 강사	전 고등학교 미술 교사
기타반	고00 강사	서울지역대학 동아리 강사

다. 홍보 및 접수

- 홍보기간 : 2023. 9. 4.(월)~ 10. 30
- 홍보 방법은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였다. 온라인홍보방법은 대학, 지역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KNOU 위클리 및 뉴스레터, 일간지 등에 행사 관련 홍보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졸업생 대상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한편 오프라인 홍보로는 지역대학 내 현수막, 포스터, 배너 게시, 인근 관공서 홍보물 부착 등을 하였으며,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동문회에도 홍보를 요청하였다.
- 접수 기간 : 2023. 10. 2.(월)~ 10. 27.(금)
- 접수 방법 및 인원 : 인터넷 접수(네이버폼 활용) /선착순 100명(불참자를 고려하여 111명 접수함)

라.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1) 프로그램 운영 및 학내 타 부서 협조

- 프로그램 운영은 방송대 교육학과 평생교육사협회 회원 중 자원봉사자 12명이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대학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실장과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었으며, 교무행정실에서도 전산실 및 강의실 공간 사용에 대한 협조를 해 주었다.
-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학내의 협조 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대 U3A 운영 사례 연구

<표 5> 서울지역대학 행정 협조 부서

부서명	협조 사항
대외협력홍보과	- 프로그램 홍보(신문, 뉴스, KNOU 스토리 등) 협조
출판문화원	- KNOU 위클리 기사 보도
교무행정실	- 전산실습실 및 강의실 등 공간 이용 협조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 프로그램 학생 홍보 협조

2) 예산

처음에는 회원제로 회비를 받아 운영하려 하였으나 현재 지역대학에서 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할 수 없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기금을 받아 무료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지출된 예산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 <표6>과 같다. (총 8,180천원 소요)

<표 6> 방송대 U3A 소요예산

예산과목 (세목)	내 용	산출내역	금액(원)
운영수당	1교시 강사료	- 강사료: 120,000원×1개 교실×8주	960,000
	2교시 강사료	- 강사료: 120,000원×3개 교실×8주	2,880,000
	3교시 강사료	- 강사료: 120,000원×2개 교실×8주	1,920,000
일반수용비	홍보 현수막 제작	- 현수막 및 배너: 100,000원×6개 홍보물품: 5,000원×100부	1,100,000
	운영 소모품 구입	- 운영 소모품: 300,000원×1회	300,000
사업추진비	업무회의비 및 다과비	- 운영진 회의비: 20,000원×12명×3회 다과비: 3,000원×100명	1,020,000
	합 계		8,180,000

3) 전체 추진 일정

방송대 U3A 추진을 위한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7> 방송대 U3A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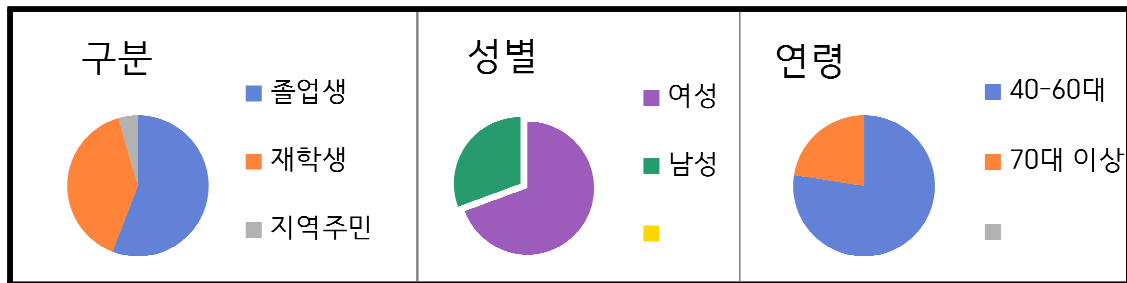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8~9월	· U3A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사전에 운영진 모임을 3회 줌으로 실시 (그 외에도 단체대화방을 활용하여 수시로 의논)
9~10월	· 프로그램 공지 및 홍보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1~12월	· U3A 프로그램 운영
12월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간담회 실시

IV. 방송대 U3A 운영 결과: 성과 및 반성

1. 방송대 U3A 운영 결과

가. 프로그램 참여자 수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14:00~17:00까지 방송대 서울지역 대학에서 진행한 U3A의 참여신청자는 졸업생 62명(55%)과 지역주민 5명(5%), 그 밖에 재학생이 44명(40%)으로, 총 111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34명(31%)이고 여성은 77명(69%)으로 여성 신청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는 40~60대가 83명(72.5%), 70대 이상은 28명(27.5%)으로 신청자의 70% 이상이 40~60대였다.<그림2 참조>. 신청 마감 후에도 계속적인 신청 문의가 있었으나 교육효과를 고려해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실제 참석한 사람은 60명 정도였으며 매주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수는 아래의 <표8>과 같다.



<그림 2> 신청자 일반 특성

<표8> 매 회차 참여자 수

단위(명)

11월 01일	11월 0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06일	12월 13일	12월 20일	계
72	59	52	57	39	41	33	44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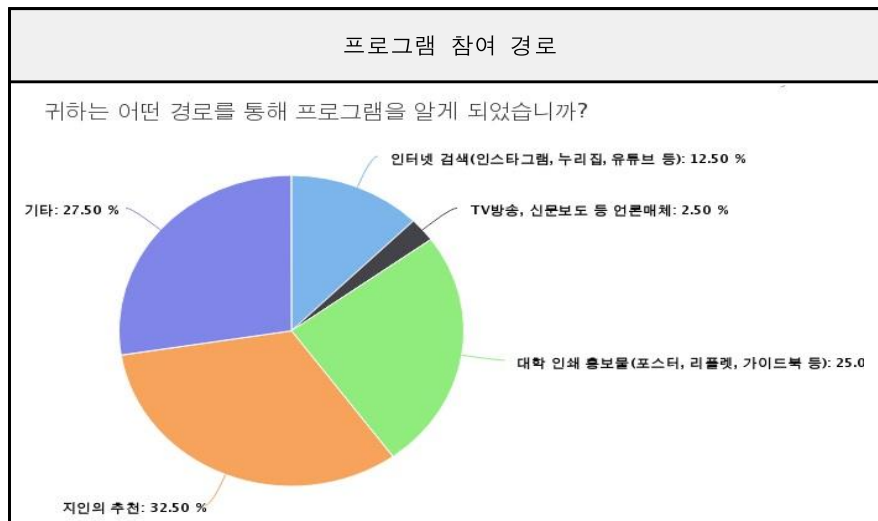
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설문 조사 결과

마지막 8회차 수업은 ‘성공적 노년과 자원봉사’라는 정리 강연 후,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된 U3A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평가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설문에 응답을 한 사람은 40명이었으며, 설문지는 오프라인과 KSDC DB를 활용하여 만족도와 참여 후기, 개선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대 U3A 운영 사례 연구

1) 프로그램 참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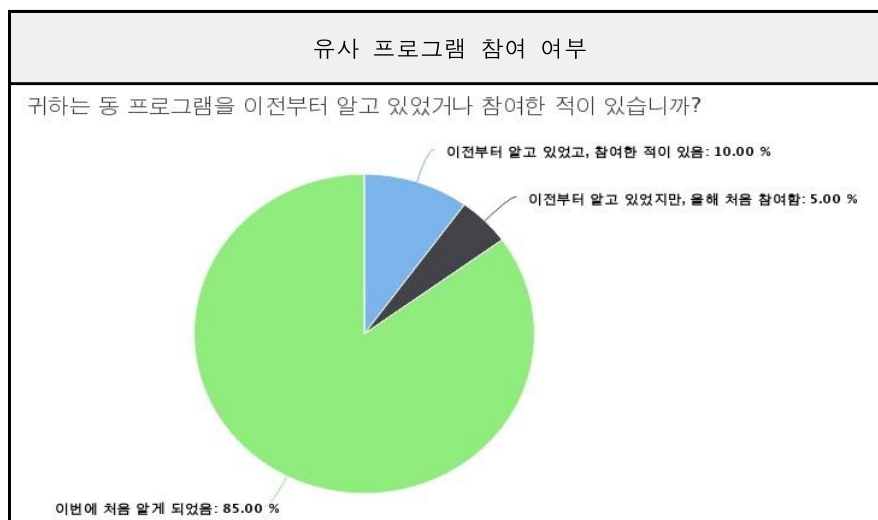
방송대 U3A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로는 지인의 추천(32.5%), 지역대학 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27.5%), 대학 인쇄 홍보물(25%), 인터넷 검색(12.5%), 언론매체(2.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인을 통한 입소문이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프로그램 참여 경로

2) 유사 프로그램 참여 여부

U3A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인지 내지는 유사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아래 <그림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참여자의 85%는 U3A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처음으로 U3A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U3A와 같은 노인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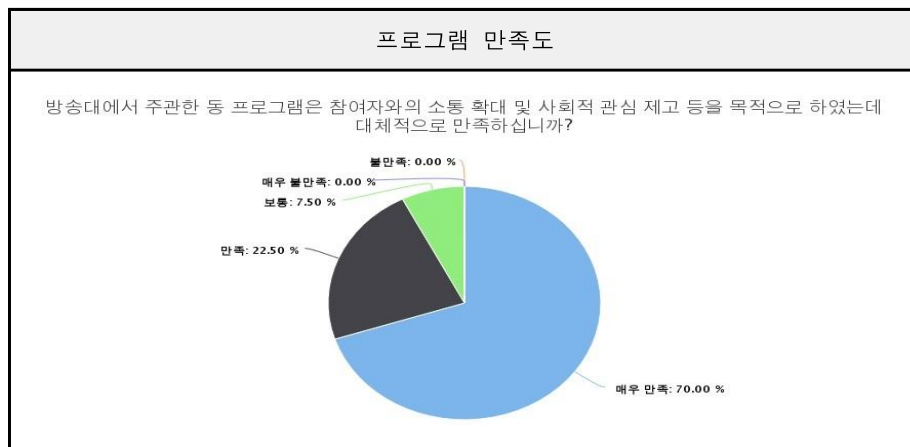


<그림4> 유사 프로그램 참여 여부

3) 프로그램 만족도

U3A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70%), 만족 (22.5%)로 92.5%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강연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57.5%, 만족 35%, 보통 7.5%로 나타나 93%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이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었는지의 여부, 향후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97.5%나 되어 본 프로그램이 U3A 프로그램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어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추후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노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교육효과라 하겠다. (구체적인 설문결과는 <그림5>와 <표8>을 참조)



<그림 5>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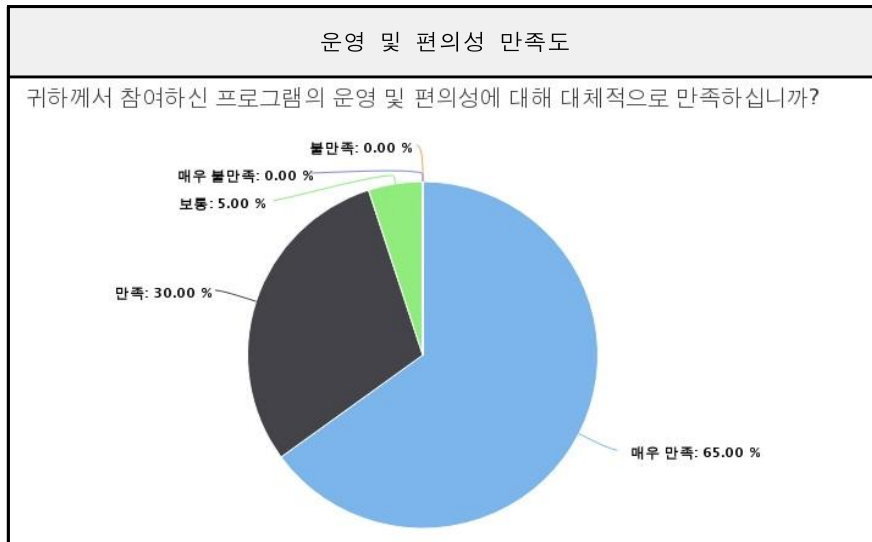
<표 9>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항목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 긍정	총 부정
프로그램이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	62.5%	32.5%	5%	0%	0%	100%	0%
프로그램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62.5%	35%	2.5%	0%	0%	100%	0%
프로그램 이후로 노년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45%	47.5%	5%	0%	2.5%	97.5%	2.5%

4)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편의성 항목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65%), 만족(30%)으로 만족 이상 응답이 95%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는 매우 만족 57.5%, 만족 32.5%, 보통 10%로 긍정적인 반응이 100%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대 평생교육사 협회 소속의 운영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추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하는 바램, 방송대에 대한 호감도 문항에 대해 총긍정이 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줄

업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방송대가 추후 노년을 위한 U3A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6>과 <표10>를 참조)



<그림 6> 운영 만족도

<표 10>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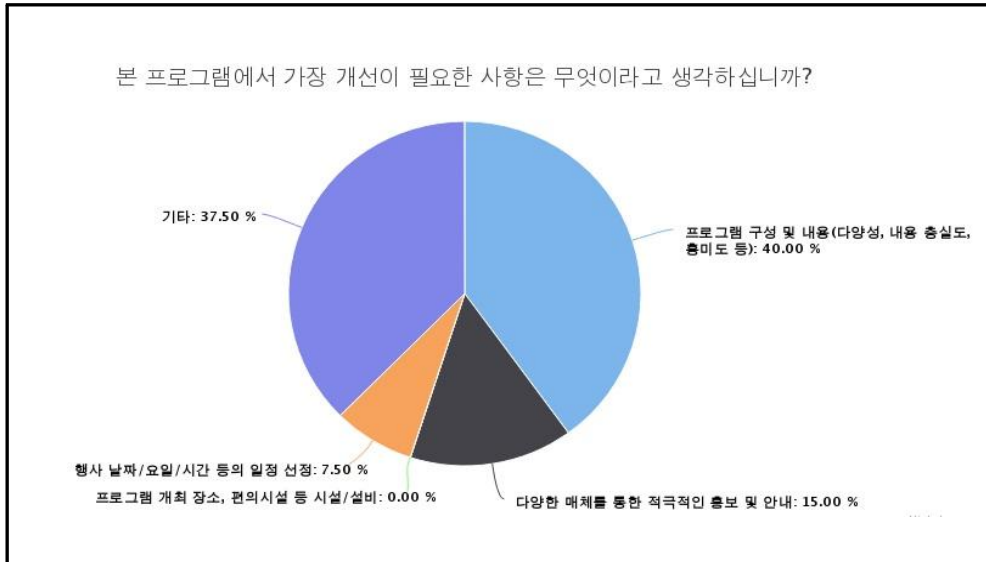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항목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 긍정	총 부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	57.5%	32.5%	10%	0%	0%	100%	0%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72.5%	27.5%	0%	0%	0%	100%	0%
프로그램 이후로 방송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	65%	30%	5%	0%	0%	100%	0%

5) 개선사항이나 제언 관련 의견

비교적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점이 제시되었으며(40%), 적극적 홍보(15%), 강의 일자나 시간의 조정, 편의시설 제공(7.5%)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워 추후 지역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었다. 첫째로는 시간 부족이다. 매 교시별 시간이 5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히 미술반이나 기타반, 독서 토론반은 충분한 학습시간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둘째,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거나 교재안내가 미리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영어그림책 읽기반의 경우, 사전에 교재를 미리 안내받았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했을 터인데 ppt 화면을 보면서 학습을 해야 했기에 불편했음을 토로하였다. 이 외에

도 시간제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1교시를 50분으로 시간제한을 한 것은 노년기 학습집중시간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고, 마지막 시간에 동아리 시간은 좀 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는 했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학교가 학습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수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7> 개선사항

참여자들의 느낀점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1> 참여자 느낀점과 제언

항목별	세부 내용
내 용	- 전체 강연과 시니어 체인지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음. 독서 토론의 경우 구성원의 작품을 서로 교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독서 토론 시간에 시간 부족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웠다. - 실기가 필요한 수업의 경우 시간적 부족함이 있었다.
지속성	-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한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고 다른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꼭 경험해보면 좋겠다.
재료 준비	- 영어 그림책 수업의 경우 책을 구매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느낀점들을 기술하도록 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과 소감들이 적혀 있었다. 학교가 다시 졸업생을 위해 무엇인가 서비스를 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 학교에 감사하게 되었고,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어졌다고 하는 의견도 피력되었다. 이 외에 중요한 의견으로는 참여자들이 대부분 졸업 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냈던 노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노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의식의 변화로 노년교육의 중요한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겠다.

방송대 U3A 운영 사례 연구

저는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나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에도 참여하고 뭔가 후손들을 위해 선배같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박00 학습자)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후에도 이런 U3A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갈망하였다. 그 중 몇 분은 경비를 지불하더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만일 돈으로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형식으로라도 모금하여 본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저는 방송대가 졸업생을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경비를 대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이00 졸업생)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특히 자원봉사로 운영을 위해 도와준 운영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자신이 손수 구워 온 케이크를 가져오신 학습자도 계셨다. 그녀의 마음이 모든 운영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는 학습을 통한 선순환과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상호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 주신 평생교육사 분들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 케이크를 구워보았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혹 넘어져 깨질까 조심하면서 왔지요 ~ ㅎㅎ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이00 졸업생)

강의를 맡아주신 교수님들도 U3A 프로그램의 의미에 동감하고 기꺼이 동참해 주셨으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신 분도 여러분 계셨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또 참여할 의사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00 교수)

외부 교수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어 제가 영광이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노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대학들이 해 준다면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U3A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황00 교수)

설문결과 외에도 연구자는 처음 준비과정에서부터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주신 운영진들의 열정과 역량에 감동을 받았다. 방송대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사를 획득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육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대 평생교육사협회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운영진들이 함께 모여 운영진 회의를 진행하였다. 각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운영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방

송대 U3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학교 행정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함께 해 준 도서관 실장과 직원 나아가 서울지역대학 직원들 모두가 협력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사료된다.

V. 맺는말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들이 나서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년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이다. 유럽에서의 U3A는 은퇴 후의 노인들이 자신의 남은 3기 인생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선배시민으로서 사회를 보살피면서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자조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되는 2030년이 되면 인구의 35% 정도가 노인이 된다. 그들이 국가나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가정과 사회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노년기를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적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국립대학인 방송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방송대는 전국에 지역대학이 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배출한 많은 졸업생들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준다면 향후 고령사회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 봉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대의 입장에서는 지역대학의 남은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U3A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육성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대의 교육학과에서 배출된 평생교육사들이 주축이 되고 여러 학과 졸업생들이 전공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협력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졸업생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학교측면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수요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방송대 U3A 프로그램이 노년기에 있는 졸업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년기의 우울증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학습자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무엇인가 선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학습자의 이야기는 앞으로 방송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것인가를 다시한번 성찰하게 해주었다. 만일 방송대가 앞으로 노년을 위한 이러한 U3A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보살핌을 요구하는 수동적 노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배시민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긍정적 생각을 가진 노인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사례를 통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개인적 차이가 있어 노년기를 조용하게 정리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노인 모두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

낼 수 있고, 모두가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므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도 학습을 하고, 무엇인가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 보고자 하는 노인학습자를 위해 방송대가 지역대학에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보고자 하는 U3A를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송대에서 U3A와 유사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어디서 U3A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단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다. 일단 지역대학의 빈 공간을 주민이나 졸업생에게 제공할 의지가 있는가? 이다. 이는 총장이나 학장의 결단이 필요하며 교수들과 직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둘째로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운영진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일단 지역대학에서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교육학과에 연락하여 방송대 평생교육사 협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방송대 평생교육사 협회의 지부가 있으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행정적인 일은 도서관 직원이 해 주면서 함께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자원활동가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좋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문제이다.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융통성있게 구성한다. 만일 서울지역의 사례와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면 1교시 강연은 본부에서 강의를 해 줄 분을 섭외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혹은 프라임칼리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녹화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zoom을 활용한 원격강좌로 운영할 수도 있다. 2교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강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3교시는 지역대학 학생회를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자치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학습자의 모집과 홍보이다. 이는 학생회나 동문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동문회의 경우에도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동문회에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경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지역에서 지자체의 펀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국공립대학 육성사업의 기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는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학교의 지역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프라임컬리지에는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프라임이 중앙평생교육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대학이 지부의 구조를 갖게 된다면 경비를 걷는 것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대학에 일정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지역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걱정과 부담을 갖게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하기 어렵다. 만일 기대되는 효과가 긍정적이고 우리 대학이 담당할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학교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하고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들이 의미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노인은 지혜의 보고였고 후손들이 의지하는 어른이었다.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사회변동이 급격해지면서 점차 노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버거운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년기에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선배로서 지역사회를 보살피고 염려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어나가야 한다. 노인들도 여전히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이고 새로운 문화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학습할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U3A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면, 많은 신노년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배출된 선배시민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2). 평생교육백서 2021.
- 김수영, 모선희, 원영희, 최희경(2017), 『노년사회학』, 서울: 학지사.
- 나향진, 김형수(2012). “유럽의 고령화현황과 노인교육의 시사점: 프랑스 Brest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회. 한국사회과학논총, 22(1), 3-32.
- 박성정(2013). “노년기 여성의 학습, 일, 여가 참여를 통한 활기찬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SSUE PAPER, 2013(1), 1-25.
- 신미식(2018), 『임파워먼트를 위한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유범상, 이현숙(2021). “노인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에서 선택시 민으로”.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61, 27-53.
- 이가옥, 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이부일·기영화(2009).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평생교육·HRD 연구, 5(1), 75-102.
- 이해주(2017). “제3기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의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 연구소. 통합인문학연구, 10(2), 129-158.
- 이해주(2020). “노년기 학습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와의 관련성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 연구소. 통합인문학연구, 13(2), 7-45.
- 이해주·곽삼근·최윤진(2019), 『자원봉사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수경, 류숙희(2015).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및 시사점”. 인문사회21. 인문사회 21, 7(4), 637-654.
- 정숙·이해주(2022).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박미시니어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교육학회. 노년교육연구, 8(1), 81-109.
- 통계청(2021). 2021년 고령자통계. 국가통계포털.
- (2022).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국가통계포털.
- 한국교육개발원(2022). 2021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한정란·원영희·박성희·최일선(2009).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교육 요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 교육학연구, 15(4), 131-161.
- 한정란·박성희·원영희·최일선(2011).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안”. 한국성인교육학회. 14(1), Andragogy Today: , 121-149.
- 황영희(2011).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학개방을 통한 노인교육 연구: 프랑스·독일·영국 노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대경제연구원(2017). 고학력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의 해부.
- DCU 자료집(2016). Dublin City University.
- Felce, D. & J. Perry.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 Feliciano V. & Montserrat C. (2012). *Generativity in Older Age: A Challenge for Universities of the*

- Third Age (U3A)*. Educational Gerontology, 38:10. 666-677.
-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Y: Dell publishing.
- Tews, H. P. (1993). *Neue und Alte Aspekte des Strukturwandels*. In: Naegele, G. & Tews, H.PI(Hg.): *Lebenslagen im Strukturwandel des Alters Alternde Gesellschaft- Folgen fur die poli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5-42. 한정란 외(2011)에서 재인용.
- U3A brochure(2016). London U3A.
- Walker, Q. & Maltby, T. (2012). *Active ageing: A strateg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117-130

참고사이트

www.u3a.org.uk

<부록>

방송대 학습공동체 U3A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당신의 경험과 노년의 지혜가 만나다」 방송대 학습공동체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대에서는 U3A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의견은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정보 등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간: 2023. 12. 13.~12. 20.		
조사기관	문의처	전자우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2-460-6799	caesar0314@mail.knou.ac.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통 항목】(필수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20~30대 ② 40~50대 ③ 60대 ④ 7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② 회사원 ③ 주부 ④ 기타 :
4. 귀하는 방송대 학생이십니까? ① 방송대 재학생 ② 방송대 졸업생 ③ 지역주민(일반인)
5.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인터넷 검색(인스타그램, 누리집, 유튜브 등) ③ 대학 인쇄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가이드북 등) ⑤ 기타: () ② TV방송, 신문보도 등 언론매체 ④ 지인의 추천
6. 귀하는 동 프로그램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참여한 적이 있음 ②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올해 처음 참여함 ③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음

7. 방송대에서 주관한 동 프로그램은 참여자와의 소통 확대 및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귀하께서 참여하신 프로그램의 운영 및 편의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프로그램 관련 항목】

프로그램 운영	1. 본 프로그램의 강연 주제와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 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 은 무엇입니까?
만족도	4. 본 프로그램이 본인의 삶에 도움 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본 프로그램을 주변 사람에게 추천 하고 싶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 되길 바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7.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다양성, 내용 충실도, 흥미도 등) ②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③ 프로그램 개최 장소, 편의시설 등 시설/설비 ④ 행사 날짜/요일/시간 등의 일정 선정 ⑤ 기타 :()
	8. 본 프로그램 이후로 노년기에 대한 생각 이 바뀌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9. 본 프로그램 이후로 ‘한국방송통신대’에 대한 호감도 가 올랐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기타 의견	10. 귀하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느낀 점 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포스트휴머니즘과 평생학습인: 대산의 인본주의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

정 민 승**

Post-humanism and Lifelong Learner: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Daesan's Idea

Jung Min Seung

◁ 목차 ▷

I. 문제제기: 왜 포스트휴머니즘을 논하는가	IV. 결론: AI 시대 인본주의 교육코드 찾기
II. 포스트휴머니즘과 복잡계의 학습	참고문헌
III. 대산 신용호의 인본주의 다시읽기	논문초록

I. 문제제기: 왜 포스트휴머니즘을 논하는가

AI가 시대어가 되고 있다. AI, 즉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겨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기술력이 전 지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 AI는 인간에 고유하다고 믿어왔던 지적 노동을 대치함으로써 노동과 직업 세계를 크게 바꾸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7,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25년에는 기계(AI)가 전체 업무의 52% 이상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론, 직업변동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바뀔 뿐이라는 예측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개인과 관련된 이슈도 근본적이다. AI는 유전자 공학, 인공 장기나 장기이식을 통한 사이보그 현상, 그리고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비인간(inhuman)의 경계가 희미해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구현하게 됨에 따라 결국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아니냐는

* 이 논문은 2023 교보교육재단 심포지움 [대산의 인본주의와 미래인재코드]의 발표문(2023. 9. 7)을 수정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불안이 ‘인간’의 경계를 흔들고 있다.¹⁾ 이는 인간의 물성(物性)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생명이나 정신의 활동을 기계나 기술의 작동과 범주적으로 서로 구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와의 차별성을 갖는 존재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 자연이나 사물보다 ‘우월’하다고 위치 지어졌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 간의 뚜렷한 경계 위에서, 인간은 사유하고, 문화를 만들고, 기계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AI는 그 선명한 경계선을 회백색 점이지대로 만들었고, 그 점이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휴머니즘에 전제된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오만함도 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가 내세운 이원적 세계관과 절대적 진리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이데거는 근대적 휴머니즘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존재의 목자(牧者),” 즉 모든 존재자들의 참다운 모습을 돌보는 자, 또는 “존재의 이웃,”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우리 앞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있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자가 될 것을 주장했다(Heidegger, 2005: 128-182).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이런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물질성에 주목하여 기계-자연-동물과의 연계 속에서 미세 먼지, 기후 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인수 공통 전염병, 그리고 사이보그와 로봇 문제 같은 인간-비인간이 서로 얽힌 온갖 ‘하이브리드적’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간의 존중을 위해서는 인간외적 존재를 존중해야한다는 것. 이것이 AI시대에 기술이 인문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교육학의 차원에서도 AI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략적으로 보면, 교육관련 담론은 크게 실천적-공학적인 논의와 비판적-윤리적 논의로 구분된다.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미래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AI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기술적 차원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전자라면, AI시대 대비를 위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이나 정보인권 및 인공지능의 윤리 등은 후자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차원에서 교육을 다룬 철학적 논의들(박휴용, 2019; 우정길 외, 2021)은 이 두 경향성을 결합하면서 교육의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흐름과는 사뭇 다르게, ‘과거의 인물’에서 발견되는 ‘탈근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창의적이거나 탁월한 인물이 있다면, 그 역시 교육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좋은-진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보문고의 창립자 대산(大山) 신용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익히 알려져있듯이, 신용호는 독립운동에 자금책을 자임하던 기업인으로, 민족자본과 국민교육을 주창했던 전형적인 근대적 위인이다. 그의 경영철학과 교육 활동이 근면과 성실, 정직과 의지를 덕목으로 삼는 근대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생나무를 뚫는 손가락의 정신’과 같은 신념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그의 삶과 철학을 세밀하게 보면, 그 근저에는 근대적 시각을 넘어서는 철학이 약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주장하고 실천한 ‘자아와 국가의 일체감,’ ‘타자 결합적 자아의 확장,’ ‘제도를 뛰어넘는 창의성,’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등은 전형적인 근대적 덕목이지만, 그가 철저히 국가의 명령이 아닌 ‘자아의 욕구에서 출발해야한다’ 고 주장했다거나, ‘동일자를

1) 마음의 기계화를 추구함으로써 오늘날의 컴퓨터 문명의 토대를 마련한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인간의 마음(정신과 지능)을 버라는 물리적 기계에 내재한 형식 기계로 간주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대한 소개로는 Dupuy(2023) 참조.

넘어서는 타자성에 대한 강조' 등 근대적 시각을 넘어서는 주장 역시 적지않게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AI시대에 요청되는 교육적 전환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대산 신용호의 삶을 탈근대적 지향성 속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미 포스트 근대적 지향을 살아갔던 대산 선생에 대한 평생교육학적 분석으로,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 몇 가지를 추려보고자 한다.

II. 포스트휴머니즘과 복잡계의 학습

1. AI 시대, '인간'을 보는 새로운 휴머니즘

근대 혹은 휴머니즘 시대에 인간은 정신/물질, 생명/기계, 자연/인공 등의 이원론적 경계 위에서, 인간 아닌 것(non-human being) 혹은 비인간과의 대비를 통해 정의된다. 인간은 동물이나 사물, 기계와의 '다름'을 통해 인간으로 상정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그리고 두드러지게 거론된 특징은 '이성'이다. 인간은 이성을 따르는 자율적 행위자, 역사의 산출 주체, 그리고 만물의 척도였다. 인간은 이원론의 이편에서 저편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때로는 배제하고 차별하는 존재, 그럼으로써 세상의 중심으로 자신을 내세웠다.

보편적 이념으로서 상정된 인간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였다. 이 자유는 신체의 자기 소유라는 모델을 따른 것이었다.²⁾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자기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성이 수립한 목적과 신체 활동의 결합, 즉 노동의 성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의 근면함이 성숙함을 보증하고, 그것이 그에게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한다. 윤리(적 성숙성), 책임, 권리 등의 규범적 개념에 대한 근대적 이해는 대부분 자신의 자유로운 자기 처분, 즉 자기 결정권에 기초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삼는다. 이때 인간의 정신, 이성, 사고 혹은 생각하는 능력은 (물론 본질적이지만 어쨌든 소유물인) 신체와 구분되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간을 다른 생명체/존재와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자연스럽게, 동물이나 자연, 기계나 사물은 주체의 자리에서 배제된 채,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처분 가능한 수동적 객체로 여겨졌고, 이성/감성이나 문명/자연 같은 이분법도 인간/동물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관계로 간주하였다. 이런 위계적 이분법은 남/여, 서구/아시아, 백인/유색인과 같은 구분과도 연동되었고, 구체적인 사회적 권력 및 지배 관계로 연결되었다.

최근 제기되는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이런 인간 개념에 전면적인 도전장을 던졌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은 비인간과의 차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AI를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해 더욱 인간 우월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울트라' 휴머니즘적 주장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인간'개념에 내재한 위계의 해체 그리고 그런 위계에 입각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극복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이다.

인간과 비인간의 연계라는 관점과 AI 시대의 교육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대적 인간관을

2) 근대적 자아관의 핵심이 소유적 개인주의임을 보여준 분석으로는 Mcperson, 1990 참조.

넘어서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체계이론이다.³⁾ 체계이론은 ‘기계’ 개념을 ‘체계’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었다. 체계이론의 대가 루만 (Luhmann, 2020)에 의하면, 인간은 근대적 인간관이 전제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독립적 유기체가 아니라, 기계와 유사한 일종의 체계이며, 생명체계, 의식체계(심리체계), 그리고 사회체계라는 세 체계가 ‘구조접속(structural coupling)’⁴⁾ 상태에 있는 체계, 즉 체계들의 체계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몸에 해당하는 생명체계는 다시 소화계, 호흡계, 면역계, 뇌·신경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서로 구조적으로 짝지어져 있는 체계들의 체계이다. 의식체계는 뇌·신경계의 발전 속에서 창발적으로(emergently) 출현한 체계이다. 의식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창발적으로 출현한 체계가 사회체계로, 이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라고도 불린다. 의식체계도 의식과 다음 의식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지만, 사회체계도 통보-정보-수용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할 경우 성공적으로 이어진다. 사회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확산하는 매체(문자, 인쇄, 전자 통신 같은 확산 매체) 그리고 개연성을 높여 특정한 방향으로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게 통제하는 매체(화폐, 권력, 진리, 사랑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 또는 ‘성공 매체’)를 통해 구성되는 방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이다.⁵⁾

이런 사회체계, 즉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의식체계와 상호침투적이다. 인간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체계가 인간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인간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형성되는데, 언어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이다(사회체계의 작동 매체이다). 그렇게 언어는 인간의 외부로부터 기원하지만,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내밀성을 지니며, 그런 의미에서 언어, 곧 사회는 인간의 ‘외밀한(extime)’ 요소이다.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으로 분류되는 여러 환경과 지속적으로 접속-적응해 나가면서 내면 자체를 조정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핵심 문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계-의식체계에 접속하는 사회 속에서, 의식체계와 사회체계의 어떤 상호변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해는 이런 복합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 3) 체계이론은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고, 하이데거는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휴머니즘의 극단, 그러니까 ‘울트라’ 휴머니즘으로 보았다. 확실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하버마스는 그런 관점에서 루만을 비판한다(Habermas, 1994: 368-385 참조). 그러나 체계이론에 의한 의식 주체의 탈중심화(de-centering)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해체하는 인식론을 열어준다.
- 4) 구조접속(구조적 짝지음으로도 번역된다)은 자기생산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적 전제조건들에 대해 체계가 맺는 관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의식체계는 자신과 결합된 생명체계의 활동에 의존한다. 만일 심장이 적절하게 박동하여 피를 뇌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고, 신경생리학적 과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타이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계는 의식체계의 자기 결정과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긴 해도 그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바랄리, 2022: 61-66 참조).
- 5) 매체는 형식을 변경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토대이다. 빛이나 공기는 이미지나 소리가 전달되는 매체이며, 우리는 통상 매체는 지각하지 못하고 이미지나 소리 같은 형식을 지각한다. 언어도 빛이나 공기처럼 매체이다. 우리는 언어가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구성되는 구체적 문장을 지각한다. 루만은 매체가 특정한 선택지를 제어하는 것을 지향하는, 즉 성공을 지향하는 매체일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루만은 사랑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소통하는 매체라고 말한다. 사랑은 의식체계에서는 복잡한 감정적 과정이지만(이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지 않는 한, 매우 모호하고 의미가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사회체계의 관점에서는 그런 감정을 특정한 형식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때 사랑은 자아의 개별성과 정체성이 인정받는 비개연적 경험(친밀성의 소통)을 가능해주는 매체로서 작용한다. 루만은 이런 성공매체의 분화와 더불어 기능적인 하위체계(경제체계, 정치체계, 대중매체, 과학체계, 교육체계 등등)가 고도로 발전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본다.
- 6) 외밀성(extimé)은 라캉이 친밀성 또는 내밀성(intimité)에 대응하는 말로 만들어낸 조어이다. 외적 존재이면서도 친밀성(내밀함)을 지닌 것을 뜻한다. 예컨대 인간에게 사회적 사건(예컨대 아버지의 죽음)은 내밀한 경험(리비도의 대상 상실로 인한 멜랑콜리)을 유발한다.

2.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학습: 모순과 불균형의 창출기제

전통적으로 교육학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인간이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자기충족적 인간, 윤리적인 인간 등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윤리철학적으로 정당화되어왔다(Peters, 1983). 또한 근대적 교육이 전제로 삼았던 것은, 인간 개인의 내면에는 각각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가정, 그리고 이를 완성시키거나 혹은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가 그 개인 외부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었다. 교육은 인간 이성의 중심인 자아를 적절한 훈육으로 완성해내기 위해 교육자가 수행하는 ‘윤리적이지만 조작적인(operational)’ 활동이었던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내면에 특정한 (가능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성장함에 따라 그것을 발양시키는 과정으로, 인간은 각각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은 그 잠재력을 키워내는 일로 정의되었다. 마치 씨앗이 물과 햇빛 그리고 거름을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인간도 좋은 교육을 통해 타고난 씨앗을 받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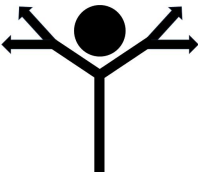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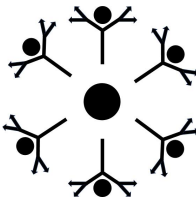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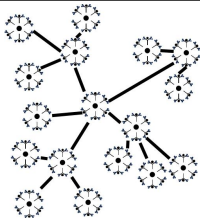
문제는 이렇게 볼 경우, 결국은 타고난 잠재력이나 능력에 따라 인간의 우열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큰 잠재력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더 큰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우생학적 사고의 기반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자아 완성’의 모델은 매우 휴머니즘적이라 보이지만, 마치 100미터 경주처럼 목표에 늦게 도달한 사람들을 계속 좌절하게 만드는 한계를 가진다.

인재상 혹은 교육적 인간상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성숙한 인간’이었고, 이는 남-녀, 자율-타율, 이성-감성, 능동-수동과 같은 이원적 대립항을 전제로 삼는 근대적 사유 구조 안에서 설정되고 작동해왔다. 다시 말해, 교육적 인간상은 이원적 대립항의 전자, 즉 남성-자율-이성적-능동성이라는 특성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성별-인종-계급적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된 시기를 맞이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⁷⁾. 즉, 근대적 휴머니즘의 교육 인간상은, 특정한 인간을 다른 인간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규범적으로 보는 반휴머니즘적 특성을 내장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자아성장의 교육철학은 경쟁적 성취모델로 작동했던 것 같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주의적 교육에서, 교육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개인의 발달은 일방향적인 성장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교육의 다면적 차원을 고려해보면, 교육의 지배적 양식은 철학-사회학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7) 예컨대 남녀 별학의 경우, 학교 교훈이나 급훈은 젠더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학교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순결, 정숙, 겸양 등이 주를 이룬다. 2010년경 페미니즘의 부상에 따라 이런 교훈이나 급훈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교육의 네 가지 양식과 그 특징

양식	양식 1 표준화	양식 2 진정성	양식 3 민주적 시민 의식	양식 4 체계적 지속가능성
시작지점	1600년대	1900년대 초반	1960년대	1990년대
과학적 태도	물리 과학	인간 과학	사회 과학	복잡성 과학
영향력 있는 담론	물리학& 공업	생물학& 구조주의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체계이론
일반적인 비유	기계적, 지향성	유기적, 분기	계약적, 협력적	생태계적, 긴급성
상징적인 시각적 비유				
지식 및 교육과정	객관화된 사실	개인적 해석	사회적 구성	생동감 넘치는 복잡한 형태
	표준, 기술 숙달	의미, 이해	참여, 의식화	건강, 의식
학습자와 학습	불충분한 그릇	충족적인 행위자	부분적 관리자	복합적인 통일체
	대응 이론	일관성 이론		
	획득, 내면화, 횡단	해석, 적응, 구현	동화, 수습, 공동 구성	지식 체계의 생명 과정
교육	지시, 연출	촉진, 지도	적응, 역량 강화	설계, 참여

자료 : Davis et al., 2022: 382를 일부 수정한 것임

표에서 제시하는 바, 각 시기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특징적인 교육의 양식 차원에서 구분된다. 양식1은 근대적 학교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기서 교육은 객관적으로 진리로 입증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준화된 지식과 평가체제를 통해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에 불과하다. 화살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교육은 방향이 있으며 직선적이고 명료한 행위다. 양식 2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은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 학습자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능력을 키워간다.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이끌기 위해 존재하며, 교육은 학습자 개인을 향한다. 학습자 개인으로부터 학습자 집단으로의 초점이동이 양식 3의 핵심 특징이다. 3은 학습조직 등의 지식경영에서 나타나는 교육으로, 교육은 사회적 차원에서 적응과 변화를 위해 존재한다. 집단은 개인의 합 이상이며, 사회와 개인은 공진화한다.

양식 4가 바로 AI시대의 교육론으로 볼 수 있는 복잡계의 교육이다. 인간과 환경은 복잡한 형태로 결합되어있으며, 학습은 지식체계의 생명과정으로 재정의된다. 교육은 학습이 창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조건을 마련해주는 설계 혹은 참여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일이다. 위의 4로 제시된, 불확실성 시대의 복잡계가 현실이라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에 적합한 체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예컨대, 양식1을 대표하는 학교에서 양식2의 철학을 가지고 지식경영에서 활용되는 양식3을 지향한다. 교육계에서 양식4는 여전히 현실을 이루지 못하는 미래상인 셈이다.

평생교육은 양식4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며, 유일하게 적용가능한 영역이다(한승희 2023). 학교가 기반하는 페다고지적 관점(Paidos어린이+agogos이끌다)을 벗어나, ‘성인 학습자’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주목한다. 학습자를 ‘이미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인 성인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아동이라는 ‘부족한 존재’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탈출하게 해준다. 성인-학습자라는 관점을 도입함에 따라 교육은 ‘미숙에서 성숙으로의 발달’이라는 틀을 벗어나 사회적 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교육은 미완이나 결여 상태의 극복이 아니라 학(學, learn)-무학(無學, unlearn)-재학(再學, relearn)⁸⁾의 순환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학습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차이생성의 활동이다⁹⁾. 본질적으로 학습은 평생학습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되도록 만들어가는 의미구성적 활동이라는 말이다. 체계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평생학습은 학습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확장해 나아가는 의미체계이자 타인-세계와의 결합을 강화하는 사회체계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생명체계의 일환이다. 한 사람의 독립된 자아가 지식을 두뇌로 익힌다는 학습의 이미지는, 우리 두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재에서 멀다.

학습은 사람들-사이(人-間)에서 일어나며 그 사이-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가면서 사회적 장을 변동시키는 일이다¹⁰⁾. 성인학습 이론들은 학습은 두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소통의 흐름으로 작동하며, 기술을 익히는 것은 훈련을 통한 숙련이 아니라 공동체의 양식을 체현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Lave, 1990).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 사람과 세계를 잇는 장치, 사람과 그 사람 내부를 연결하는 성찰은 학습을 통해 동시적으로 작동한다. 학습은 시대-사회-삶을 추동해내는 구성력인 것이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의 등장을 통해서 비로소, 학습자는 사회적 존재이며, 학습이 생명의 기반을 이룬다는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습은 다양한 소통-장치들 속에서 무의식과 의식이 분화되고, 타인과의 접속영역들이 생겨나면서 문화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매일의 일상을 갖고/다르게 이행해나가는 과정이며, 교육은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활동이다.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가 근대적 휴머니즘의 교육철학이라면, AI시대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구조접속하면서 살고 있으며, 이들을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평생교육은 후자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 표의 4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양식을 갖는다.

8) unlearn은 번역하기 까다로운 말이다. 그것은 기존의 앎의 내용, 틀, 체계를 허무는 과정으로, 대개 ‘폐기학습’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산의 무학이 가진 두 가지 의미, 즉 학교경험부재와 잘못된 지식이나 관행이 있다면 가차 없이 무화시켜내는 능력을 중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배움을 무화(無化)한다’는 의미에서 무학으로 번역하였다.

9) 여기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체계이론과 함께 주목해야 할 이론은 들뢰즈의 해체주의이다. 잘 알려져있듯이, 들뢰즈는 기계-인간, 생성하는 욕망, 고평인 공간, 영토화와 재영토화 등의 개념을 통해 동일자의 철학을 차이생성의 철학으로 전환한다(Deleuze, 2004). 교육학적 차원에서는 ‘차이생성의 배움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앎의 세계라는 ‘정적인 상태’로 입문시키는 재현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부단히 차이를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인 배움의 운동을 수행하게 하는 활동이다(김재춘, 2023). 달리 말하면, 배움의 운동은 재현 활동이 아니라 창조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은 관행적 ‘재현의 교육’을 벗어나 차이를 만드는 평생학습을 건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렇게 보면 평생학습은 학습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으나, 학습이 학교에서의 활동으로 축소 해석되는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학습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습의 학교 밖-전생애적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생겨난다(정민승, 2010).

이렇게 보면, AI라는 환경은 구조적 속 되어있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여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사이에 주목하면, 개인무의식은 물론 집단무의식도 학습욕망 및 학습역동을 구성하는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은 근원적으로 무의식 수준을 반영하며, 우리를 행동하게 추동하는 망(web)/장치에 의해 한정된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마치 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일정한 수준의 성취/인식에 도달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망-장치의 작동, 역사적 경험이 가져온 집단 무의식의 반향을 빼놓고는 불가능한 결과들이라는 말이다.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특정한 완성을 향해 가는, 말하자면 ‘자아완성’을 향해가는 일관된 활동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무의식, 그리고 개인과 불가분 연결되어있는 타자들, 자아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테크놀로지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교육-학습에 대한 관점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산의 삶과 업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Ⅲ. 대산 신용호의 인본주의 다시 읽기

대산의 삶을 추동한 힘은 지극히 근대적인 에너지였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근면과 성실의 품성, ‘하면 된다’는 의지는 근대 국가 형성의 동력이라고까지 간주되는 국민됨이었다. 동시에, 대산의 경영지침에는 상하관계와 후견 등 전근대적 특성도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이는 “유교철학과 근대적 합리적 사고를 접목”(황명수, 1996: 27)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정서와 근대적 사고라는 외피를 걷어내고 보면, 대산이 ‘근대적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조직론은 탈근대적 관점을 필요로 하는 조직방식이나 그의 [새경영]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학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교보문고라는 ‘학습환경’을 제공한 것, ‘상호교육’을 통해 교육자와 학습자가 동등하게 소통하도록 한 것 등, 근대적 관점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교육원리를 구현하였다. ‘인본주의’라 일컫는 대산의 정신은 서양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인간상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냈던 것이다. 대산의 독특한 인본주의가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보자.

1. 교육은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 교육에 대한 탈근대적 관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20대 후반에 해방을 맞은 대산 신용호 선생 세대에 ‘나라 만들기(Nation-Building)’는 윤리적 정언 명령(定言 命令)과 같은 시대적 과제였다. 그리고 나라 만들기는 지극히 근대적인 과제이다. 그러므로 그의 비전이 국가나 국민 같은 근대적 어휘 속에서 표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근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론은 근대적인 것에 머물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다. 왜 그런지 보자.

대산은 나라 만들기에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이 희망’이라고 본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근대적이다. 그러나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이라는 근대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평범하고 일견 근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거기엔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숨어 있다.

대체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로 간주되며, 학교의 경우 그것은 수업과 같은 특정한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문화 전수 혹은 지식전파는 될 수 있어도 엄밀히 말해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교육은 타율로부터 자율을 끌어내고, 사회화를 통해 개인화를 성취하는 역설적 과정이다. 이 역설적 성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자기조직(self-organizational process)의 방식으로 일어나야 하며, 교육은 학습자들의 이런 활동을 신중하게 끌어내는 작업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의 자기조직적 활동이 창발적 질서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교육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학습자들이 더 깊고 넓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인가”가 교육에 던져진 질문이어야 한다.

대산의 교보문고 설립은 대표적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지원체제’ 제공이라는 그의 비전을 창의적으로 실현한 예라 할 수 있다. 대산은 교보문고를 서적 ‘판매’의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으로 구상했다. 여기엔 대산 자신의 학습 경험이 작용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처지였던 대산은 1,000일간 100권의 책을 읽기로 했고, 그 결심을 실제로 실행해냈다. 그렇게 해서 읽은 고전들과 위인전은 대산에게 인생의 길을 밝혀주었고 지혜의 원천이 돼 주었다. 대산은 책을 통한 자신의 성장 경험을 학생들에게도 열어주기 위해 하나의 학습 공간으로서점을 연 것이다.

서점을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개관 당시 직접 지시한 다음과 같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침>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5가지 지침>

1.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쓸 것
2. 오래 봐도 제지하지 말 것
3. 사지 않아도 눈총 주지 말 것
4. 베껴도 그냥 둘 것
5. 훔치더라도 도둑 취급 말고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존댓말을 쓰고, 어떤 행동도 제지하지 않으며, 심지어 훔치는 경우에도 관용적 태도를 보이라는 것은 서점에 온 학생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명한 것이다. 이는 ‘서점에 온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없다면 불가능한 지침이었다(정인영, 2017: 271).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서점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말하자면 전국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한 것이 대산의 교보문고가 가지는 의미인 것이다.

대산은 교보문고 설립 이후, 전 세계에 22만 5천여 권의 한국학 도서 기증 사업으로 나아간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도서관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사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산의 업적들은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사업이라 할 만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바꾼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김두철·조금주; 한국보험학회, 2014). 이는 당시의 근대적 관점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험회사’라는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인본주의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나라 만들기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선각자들은 대부분 학교를 지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가 있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

한 열망이고(배우고자 한다면 학교 없이 심지어 교사 없이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열망을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펼쳐내려는 용기이다. 이 용기를 마음 밖으로 꺼내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나 타자의 생계를 돌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삶의 한 기간(또는 정기적으로 하루의 한때)을 온전히 배움에 쏟을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교육’ 보험이라는 대산의 판단은 당대의 욕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민을 학습자로 그리고 국가를 교육자로 설정하면서, 학습지원체계를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그 둘을 연결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산은 보험의 이름도 ‘진학보험’으로 정해, 1950년대 전후의 궁핍한 상황 속에서 국민 일반이 자녀 교육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누구나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간단명료한 비전은 회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교보’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국가적으로는 학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만들어냈고, 결국 중등-고등교육의 보편화로 나아가게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대산은 학습자와 교육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지원체제라는 보편적 요소를 그 시대에 맞는 제도적 형식(즉, 보험)으로 구현했던 셈이다.

2. 회사에서의 관계조차 교육적이어야 한다: 전근대적 가치의 탈근대적 조명

대산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교육적이었다. 여기서 교육적이라 함은 ‘당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인격적 관계’를 모든 관계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대산이 제창했던 교육론은 ‘상호교육론’으로, 상호교육이란 “대화를 통하여 경험이나 성패 사례를 서로 주고받는 교육방법”(신용호, 1987: 109)을 말한다.

대산은 상호적인 경험의 장을 만들고, 그러한 장소에서 교육 참여자들끼리 상호교사가 되어 체험, 지식, 의견, 정보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배우고 익히는 교육을 통해 성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산이 1950년대부터 주창했던 상호교육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두철·조금주; 한국보험학회, 2014: 212).

첫째, 참여자끼리 상호교사가 되어 체험과 지식을 서로 주고받는 교육이다.

둘째,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사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사례발표, 역할연기, 대화 등 상호적인 교육을 교육 방법의 기본으로 한다.

넷째,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솔직하고 초점 있는 발표와 타인을 존중하는 경청이 중요하다.

여섯째,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바람직한 태도, 기능, 지식을 배우고 익힌다.

일곱째, 결과는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한다.

이런 일곱 가지의 특징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장된 신경영의 원리로서의 ‘학습조직론’과 맞아있다. 학습조직은 일종의 실천공동체로서, 기업의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경영을 위한 방법론이다. 그것은 기업의 구성원을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회사를 구성하는 조직원으로, 회사에서의 업무를 학습 과정으로

재규정한다(Senge, 2014).

대산은 ‘회사 전체가 교육조직이어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통해 학습조직론을 작동시켰다. 1959년 업계 최초로 교육훈련 전담부서를 만들고 연수원을 짓는 등 인력양성의 전문성을 꾀했지만, 이어 회사 내 교육부서를 없애는 단계로 나아간다. “회사 전체가 교육부서인데, 교육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이강환, 2004: 56)는 것이다. 전 회사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점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기업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실천공동체를 만들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가 될 때 기업 자체가 성장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가 가진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발견하고 논의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상호교육론이 사제관계론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산은 상사 혹은 간부에게 더 엄격한 준비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대산은 상사에게 스승의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고, 간부들에게 철저히 준비하는 교사의 마음가짐을 요청했다. 이는 대산이 기업을 가족으로, 경영을 교육과 등치하는 입장을 취했던 데서 비롯된다. 대산 스스로가 그러했지만, 그는 상사와 부하가 “서로 믿고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제관계가 되어야 일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현장은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신용호, 1987: 78)고 보았다.

상사-부하직원의 관계를 사제관계로 보는 입장은 전형적으로 권위적이며 전근대적이다. 그러나 대산은 이를 ‘상호교육’과 결합함으로써, 상사-부하간의 평등 위에서의 상사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상호교육의 장에서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며, 상사는 작업위계상 상급자를 넘어선 ‘스승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끌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대산은 ‘전 간부의 교사화’를 지향했던 것이다.

상사는 스승으로서 부하를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제자로 생각하여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되 아끼는 마음으로 엄하게 지도하여야 합니다. ... 자녀는 부모를 닮고 학생은 선생을 닮듯이 부하 또한 상사를 닮기 때문에 ... 간부는 스승으로서 부하의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호, 1987: 78-79)

대산은 보험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회사 안을 내야로, 대리점 등 회사 밖을 외야로 칭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엮는 조직관리의 방안으로 교육을 제안하였다. 학습조직론이 출현하기 반세기 전에 기업의 동력을 학습에서 찾고, 학습조직의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역할연기 등과 같은 전달력 있는 방법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고, 새롭게 배우고 익힌 내용을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하는 순환은 회사의 업무를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성장으로 해석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경영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데, 사업계획의 교체화, 전 간부의 교사화, 1:5 조직관리의 생활화, 지식의 지속적 근대화, 자기 개발의 생활화, 정신공간의 가치화가 그것이다.

이런 시도가 가지는 교육학적 의미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당연시되는 ‘교육자=지적으로 우월한 자=권력을 가진 자’라는 관점을 폐기하고, 학습자와 교육자의 구분선을 없애는 동시에 제자와 스승의 인격적 관계성을 회사에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런 지향성 밑에는 인간의 근본적 타자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공동체나 조국과 동일시하는 사고에 대해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전체주의는 개인에게 그러해야 함을 공동체가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그 요구 자체를 망각할 것까지(즉 자율적 동일시로 인식할 것까지) 명령하는 체제이다. 인간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하여 자유와 조국을 동일시하는 것은 존재 일반에 대한 깊은 염려와 배려의 태도와 연결된 것이다. 그 동일시를 추동하는 것은 대산이 말하듯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대산은 회사에서 역할에 따른 구분은 분명하되, 아(我)와 타(他)를 연결하는 정서적 연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지향성은 그가 즐겨 인용했다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마지막 구절을 언급하며 했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드러난다.

내가 나고 내가 너다. 참공동운명체로서 사랑하는 삶과, 사랑하는 자유와, 사랑하는 조국과, 사랑하는 일과 한 몸 한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신념이 생긴다. 그리고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종은 곧 나를 위하여 울리는 종이다.

3. 학이 무학이고, 무학이 학이다 : 학습의 본질을 향한 탈제도적 접근

학교와 관련해서 보자면, 대산은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않았다. 대산의 학력은 ‘무학’으로, 여러 전기에서 ‘무학임에도 불구하고’로 인용된다. 즉,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나,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학(學)을 배움의 능력(學力)이 아닌 학교의 이력(學歷)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배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학습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구조적 적응을 통해 적합성을 높여나가는 작업이며, 이렇게 볼 때 학교는 특정한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 학습을 틀 지우는 제도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기관에 가깝다. 그리고 그 ‘특정한 방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수동적이고 지식중심의 학습이다.

또한 학교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국가 일반에서 그렇듯, 우리사회에서도 계층상승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교육열’로 대변되는 진학욕망은 전 국민이 가진 정서적 특징이기도 했다. 학습과 관련해서 본다면, 학교의 도구적 위상은 학교가 본래적 목적인 교육보다는 부차적 목적인 사회계층상승을 위해 기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에서의 성취나 성공이 사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대산의 ‘무학’은 학교를 통한 계급상승이라는 소외된 욕망의 회로를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열정적으로 학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육자원을 학교가 아닌 일상에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대산이 자신의 학습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그 가운데 대산은, 중요한 학습원을 책으로 설정하였고, 책의 내용과 위인들의 삶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습득하였다. 학교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들어가 보지 못한 학교도 없고 졸업해본 학교도 없다. 독서를 통해 자기개발적 방법으로 이날까지 지식을 지속적으로 무장해왔다.

대산은 “나는 들어가 본 학교가 없다”가 아니라, “들어가 보지 못한 학교가 없다”고 말한다. 들어가 보고 싶은 모든 학교를 다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학교는 물리적이고 제도적

인 학교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학습, 그리고 학습의 장이다. 그는 학습하고 싶은 것을 거리낌 없이 학습했다는 것이다. 그는 “졸업해본 학교도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학교를 졸업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끝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진정한 학습의 세계, 대산이 말하는 학교에서는 졸업이 있을 수 없다. 학습은 삶 자체와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교육사회학적 차원에서 학교가 가진 주요한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커리큘럼을 가동시킨다는 점이다. 규범이나 규율은 교과서나 교과목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 일종의 사회화를 이루어간다. 이 가운데 하나가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을 사람들에게 장착시키는 일이다. 제도가 요청하는 바를 자연적 질서로 수용하는 경향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산의 무학은 학교의 틀을 넘어서 창의로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 창립, 세계 최대의 서점 건축, 교육보험이라는 전대미문의 보험 사업 발명 등 대산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발명가적 정신이 발견된다. 실패는 단지 또 다른 도전의 자원이었다. 대산은 역경이 닥치면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학을 형성하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의도적 무학을 견인하면서 평생학습의 연쇄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즉, 대산에게 ‘무학’이라는 말은 ‘학’에 머무르지 않음, 즉 평생교육의 학(learn)과 무학(unlearn)과 재학(relearn)의 순환 과정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대산의 무학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그의 ‘국가적 스케일’이다. 그는 중국에서 어렵게 번돈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군자금으로 내놓았고, 해방 후 ‘민주문화사’와 ‘한약직물’, 그리고 ‘동아염직’과 ‘한국제철’이라는 전혀 다른 직종의 회사들을 ‘민족자본’의 구축을 위해 창설했다. 교보문고와 문화재단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고안된 사업들이었다(정인영, 2017). 말하자면 대산은 자신을 국가와 등치시키는 입장 속에서 독심을 발휘한 것이다. 이는 최근의 ‘페르소나조차 형성되지 않은 과도하게 개인주의화된 아이들’과 반대되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산은 자신을 국가와 등치시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 후기구조주의자인 라캉의 도식을 생각해보자¹¹⁾. 라캉에 따르면, 인간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기표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생애 초에는 어머니의 욕망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욕망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표가 아버지(아버지의 욕망)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아버지가 욕망하는 바를 표시하는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드넓은 사회문화적 가치(인류의 문명적 성과가 지향하는 바)이다.

아이였던 (나)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욕망을 표현하는 기표로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직접 연결되고, 그것으로 그를 인도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잇는다. 라캉은 이런 욕망의 기의와 기표의 전이 과정을 수식인 듯이 연결하여 곱하고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여 궁극적으로 아이가 도달하는 세계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11) 라캉은 주체로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텅 비어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괄호 속의 (나)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백지로 온다. 의식적 삶과 소통 속에서 그것의 내용이 채워진다. 분자와 분모로 표시된 것은 라캉이 구조주의적 언어학에서 빌려온 표식이다. 의미가 표시되는 것을 기의(signified, sd로 약함),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기표(signifier, sr로 약함)라 지칭하는데 둘의 관계를 $\frac{Sr}{Sd}$ 로 표시한다.

$$\frac{\cancel{\text{어머니의 욕망}}}{\text{(나)}} \times \frac{\cancel{\text{아버지의 욕망}}}{\cancel{\text{어머니의 욕망}}} \times \frac{\text{사회문화적 가치}}{\cancel{\text{아버지의 욕망}}} \\ = \frac{\text{사회문화적 가치}}{\text{(나)}}$$

이 도식을 대산에게 대입해본다면, 대산의 부모는 당시 상당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민족독립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던 반면, 학교를 경유한 개인적 출세를 욕망으로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²⁾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학교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 가장 유력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었으니, 많은 부모들의 욕망에 얹혀있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산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산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서 건네받은 것은 ‘책’이었고, 어머니는 ‘책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한다. 또한 대산의 소위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였던 친지들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보다 근본적 가치를 지향했다.

즉, 대산에게 무학은 민족적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가지게 한 조건이었으며, 시대적 차원의 ‘나라 구하기’와 ‘나라 만들기’를 향한 절실함은 개인적 출세나 성공을 넘어서 중심 가치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파산과 교보문고 설계변경, IMF 등 위기상황에 처할 때마다, 대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지사로서의 의지로 임했다(정인영, 2017). 대산에게 무학은 그의 내적 추동력을 만들어낸, 일종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IV. 결론: AI 시대, 인본주의적 교육의 틈새 찾기

‘근대적 휴머니즘에 근거한 인간존중’이란, 계급이나 인종·성별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동물이나 기계와 다른 인간 고유의 합리성을 선포하는 일이다. 인간-내-평등과 인간-외-차별의 구분은 인간이라는 동질성 경계를 강화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아감벤이 언급한대로, 인간사회에 예외없이 등장하는 ‘예외상태’ 즉, 법적 효력이 정지된 상태는 인간-내-평등이 얼마나 쉽게 인간-외-차별로 전환되는지를 잘 보여준다(Agamben, 2009). 예외상태의 사람들이란 법의 영역에서 쫓겨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에 놓여있는 목숨이다. 그런 인간-내-평등에서 배제된 인간들,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라 부른 면책 살해 대상으로서의 인간들이 얼마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자 지구 그리고 도처의 난민 캠프 등등의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I 시대에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런 근대의 문법과의 단절에서 시작된다. AI 시대는 인간-기계의 구분이 흐려지는 시대이다. 인간 안에 기계장기가 내장되고, 타인의 장기가 이식된다. Chat

12) 위 도식은 최근의 ‘어른아이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견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향하는 엄마의 욕망인데, 엄마의 욕망이 아이에게 고착되면, 아이가 사회문화적 가치의 세계로 나아가는 전이 과정은 중단되게 된다. 엄마가 아버지를 욕망하며, 아버지가 의미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향할 경우야 비로소 아이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욕망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입시성공을 과도하게 욕망하게 되면, 자녀는 입시를 통해 부모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위치에 서게 되며, 성공할 경우 나르시즘적 자아만이 남으며, 실패할 경우 정체성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사회적-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향한 욕망 이외의 더 큰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분석으로는 김종엽-정민승(2019) 참조.

GPT가 제시한 내용으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문서를 작성한다. 르노아르의 작품이 피카소의 화풍으로 재제작되고 좋아하는 발라드 곡을 작곡하여 들려주기도 한다. 나와 타자, 나와 기계 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기계나 동물, 자연 생태를 다시금 조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이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물질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각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비인간의 경계가 열린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생태계가 파괴되건 말건 인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타자의 신체는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갈림길에서, 누구나 공멸의 방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의식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지워진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는 근대적 인식으로는 사회적 실재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해 왔다. 그래서 인간상과 목표만 잘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결과가 나쁠 때도 그런 기대를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다분히 자동화된 메커니즘으로, 특정한 인간상의 실체(entity)에 매달린다. 인간상에서 지식인상으로, 최근에는 인재상으로, 여전히 실체를 조각해가는 방식으로 교육목적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교육의 실패가 상당부분,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하여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상과 목표만 조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앞서 말한 바,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니라 ‘교육 체계’에 주목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인간을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 훌륭한 교육목적들이 구현되지 못하는가? 혹은 어떤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창발적으로 학습하는가?일 것이다.

대산의 삶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단서들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지침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창발적 성장을 믿고 단지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 동등한 지위의 교육자와 학습자가 상호 교류하면서 경험을 확장하라는 것, 그리고 학-무학의 교차적 상승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코드’를 교육의 환경에 심어놓으라는 요구이다. 학습자들이 구조 접속하는 환경들이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해 배치될 때, 학습자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AI시대를 이끌어가는 휴머니즘을 구현하는 인재들이 될 것이다.

‘대산의 인본주의’는 기존의 휴머니즘과 교육이 맞닿는 지점을 벌려 새로운 논의와 실천이 가능하게끔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발점을 알려준다. 예컨대, 국민이라는 교육대상은 손쉽게 일방학적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맞물리지만, 대산이 제시한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은 국민에 대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온정적 배려로 이어진다. 국민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두가지 버전 가운데 포스트모던적 출발점은 후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사랑 속에서 대산은 삼엄한 국가주의 하에서도 국민들의 창발적 활동을 돕는 환경을 설계했고, 그것이 문화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대산의 인본주의는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강력한 전체적 리더십을 상정하지만, 정작 조직을 가동하는 원리는 상호교육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평등한 역동적 관계’였다.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각의 경우, 교육은 가르치는 활동으로 협소화되며, 교육자의 강력한 권위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대산은 강력한 가부장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도 가르침과 배움을 상호적인 과정으로 보면서 새로운 역동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전근대적인 권위도, 근대적인 합리성도 아닌, 포스트휴먼적 상호성과 관용이 대산의 인본주의에는 녹아있다는 것이다. 무학을 학으로, 학을 무학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유연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산은 배움의 본질에 온전히 착목하여, 학위와

같은 형식보다는 배움 자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사업의 중심에 교육이 있고, 교육의 중심에 배움이 있어 배움에의 열정이 사업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AI시대,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이면서도 동시에 전근대-탈근대적이었던 대산의 인본주의, 그리고 그 독특한 인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배움의 내적 동학을 적극적으로 전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보교육재단(2019), 『대산 신용호의 교육이념과 미래교육』, 서울 : 학이시습.
- 권경현 외(2004), 『내가 만난 대산: 세상엔 거저와 비밀이 없다』, 서울 : 교보문고.
- 김재인(2020), 『뉴노멀의 철학』, 서울 : 동아시아.
- 김재춘(2023). “새로운 학습실천을 위한 평생교육의 관점전환”. 2023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중엽·정민승(2019), 『입시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과주 : 교육과학사.
- 김환석 외(2020),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서울 : 이성과감성.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의 미래』, 전주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용호(1987). “새경영”. 대한교육보험 교육자료.
- 우정길 외(2021),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학』, 서울 : 학지사.
- 전성태(2008), 『떠나라 낯선 곳으로: 변화혁신 50년』, 서울 : 교보생명.
- 정민승(2021),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서울 : 에피스테메.
- 정인영(2017), 『길이 없으면 만들며 간다』, 서울 : 교보문고.
- 한국보험학회(2014), 『교육의 미래를 보험에서 찾다』, 서울 : 교보문고.
- 한승희(2023), 『평생학습이 창조한 세계』. 서울 : 학지사.
- 황명수(1996). “대산 신용호의 생애와 경영이념”.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12집.
- Agamben, J.(2009), *Homo sacer.v. 2, pt.1, Stato di eccezione*, 김항 역, 서울 : 새물결.
- Baraldi, Claudio·Corsi, Giancarlo·Esposito, Elena(2022), *GLU :Glossar zu Niklas Luhmanns Theorie sozialer Systeme(9. Aufl.)*, 심철민 역, 서울 : 도서출판b.
- Brent Davis, Dennis Sumara, Rebecca Luce-Kapler(2021), *Engaging minds :cultures of education and practices of teaching(3rd ed.)*, 한승희 외 역, 서울 : 교육과학사.
- Deleuze, G. (2004), *Différence et Re'p'e'tition*, 김상환역, 서울 : 민음사.
- Dupuy, Jean Pierre(2023), *On the origins of cognitive science : the mechanization of the mind*, 배문정 역, 서울 : 지식공작소.
- Habermas, Jürgen(1994),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이진우 역, 서울 : 문예출판사.
- Heidegger, Martin(2005), *Wegmarken 2*, 이선일 역, 서울 : 한길사.
- Lave, J. & Wenger. E.(2010),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손민호 역, 서울 : 강현출판사.
- Luhmann, Niklas(2020), *Soziale Systeme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이철·박여성 역, 서울 : 한길사.
- Macpherson, C. B.(1990),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 Hobbes to Locke*, 황경식 외 번역. 박영사.
- Peters, R. S.(2003), *Ethics and education*, 이홍우·조영태 역. 과주 : 교육과학사.
- Senge, P.(2014), *The fifth discipline fieldbook: Strategies and tools for building a learning organization*, NY: Crown Business.

• 편집위원 •

위원장	이	석	호
위원	손	향	숙
	정	현	욱
	박	종	성
	이	영	애
	박	지	호
	정	광	식
간사	김	태	한
	김	자	영
	이	선	영

KNOU 논문 <第77輯>

2024年 2月 28日 印刷
2024年 2月 28日 發行

編輯人	韓國放送通信大學校 論文集編輯委員會
發行人	高 晟 煥
發行處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印刷處	社會文化社(☎2263-0523)
